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간접투자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2007. 11

안종석 · 전병목 · 김태훈 · 문예영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 간접투자 과세제도의 현황	11
1. 간접투자제도	11
가. 간접투자와 간접투자기구	11
나. 간접투자기구의 분류	12
2. 간접투자기구 과세이론	13
가. 신탁실체설	13
나. 신탁도관설	13
다. 신탁실체설과 신탁도관설의 차이점	14
3. 간접투자기구의 소득구분	15
4. 투자자의 과세제도	17
가. 투자신탁형	17
나. 투자회사형	20
5. 간접투자기구의 과세제도	23
가. 투자신탁형	23
나. 투자회사형	24
III. 주요국의 간접투자 과세제도	27
1. 영국	27
가. 개관	27
나. 간접투자기구의 과세제도	31
다. 투자자의 과세제도	36
2. 미국	41

가. 개관	41
나. 간접투자기구의 과세제도	44
다. 투자자의 과세제도	50
3. 일본	54
가. 개관	54
나. 간접투자기구의 과세제도	57
다. 투자자의 과세제도	60
IV.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간접투자자와 관련된 국제조세제도	64
1. 한국의 국제 간접투자세제	64
가. 역외펀드(Offshore Fund)의 의의	64
나. 간접투자기구의 세제	64
다. 투자자의 세제	67
2. 영국의 국제 간접투자세제	72
가. 역외펀드(Offshore Fund)의 의의	72
나. 간접투자기구의 세제	73
다. 투자자	75
3. 미국의 국제 간접투자세제	77
가. 역외펀드(Offshore Fund)의 의의	77
나. 간접투자기구의 세제	77
다. 투자자	80
4. 일본의 국제 간접투자세제	84
가. 역외펀드(Offshore Fund)의 의의	84
나. 간접투자기구의 세제	84
다. 투자자의 세제	86
V. 간접투자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주요국의 입법례	89
1. 직접투자와의 조세형평성에 관련된 문제점	89
가. 일부 소득 비과세	89

나. 투자손실 시에도 납부세액 발생 가능, 결손금이 이월되지 않음	93
다. 간접투자로 얻는 배당소득의 경제적 이중과세	96
2.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에 관련된 문제점	100
가. 원천징수 의무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	100
나. 원본전입 특약의 경우 미확정된 조세채무를 확정된 조세채무로 인식	102
VI. 시사점	104
1. 투자자가 배분받은 소득의 구분	104
가. 불완전 도관 및 이중과세 조정	104
나. 직접투자와의 형평성	105
2. 투자손실을 반영한 과세소득 인정	107
3. 도관 또는 실체에 대한 구분	108
참고문헌	110

I. 서론

‘간접투자’는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간접투자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투자자산을 직접 운용하여 투자의 결과를 얻는 대신에 간접투자기구 등에 투자자산의 운용을 일임하여 그 투자의 결과를 지급 받는다. 간접투자는 직접투자의 위험성으로 인해 투자를 꺼리는 투자자를 자본시장으로 유인하는 데 효과적인 제도이다. 즉, 유능한 전문가가 자금을 운용하여 직접투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성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며,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게 한다. 간접투자기구 등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에 따르면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 포함)와 투자신탁으로 구성된다¹⁾.

하지만 세법에 따르면 간접투자기구는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 포함)²⁾,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³⁾ 및 그 외의 신탁⁴⁾(이하, 특정신탁)으로 구분된다⁵⁾. 세법의 분류가 간투법의 분류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근거 법령이 간접투자기구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간접투자 과세제도란 간접투자자와 관련한 모든 세법상 제도를 의미한다. 간접투자

1) 각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설명은 ‘Ⅱ.1.가.1)’에서 설명됨.

2) 法人稅法 제2조 제1항 제1호, 法人稅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다(所得稅法 제17조 제1항 제5호, 所得稅法 施行令 제23조 제3항).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의하여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2005.2.19. 법령개정)부칙
2.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함.

5) 所得稅法 제4조 제2항

와 관련된 세법상 제도는 크게 간접투자자로 인한 과세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와 간접투자기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과세제도가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간접투자자로 인한 과세소득 규정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간접투자기구에서 집계된 후 간접투자자에게로 이전된다. 따라서 간접투자자와 관련되어서는 첫째 간접투자기구 단계⁶⁾, 둘째 간접투자자 단계의 두 단계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간접투자 과세제도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에 기술되는 간접투자제도의 특징부터 알아야 한다. 첫째, 간접투자자는 ‘간접’적으로 투자재산을 보유하고 운용의 성과를 배분받는다. 간접적으로 투자재산을 보유·운용하기 위해서는 ‘간접투자기구’란 일종의 도관체(Conduit)를 설립하여야 한다. 둘째, 간접투자기구가 투자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결과는 ‘투자’소득이고, 간접투자자는 이 투자소득을 재원으로 투자성과를 배분받는다. 따라서 투자자가 배분받은 ‘투자’소득에는 투자재산의 성격에 따라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간접투자의 특징은 바로 간접투자 과세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음은 간접투자 과세제도의 특징이다.

첫째, 간접투자기구의 실체인정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투자자는 투자재산의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통로(Pass-through, Conduit)인 간접투자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한다. 비록 간접투자기구의 실질이 통로이지만, 형식적으로는 투자소득이 먼저 간접투자기구에 집계되고 이것이 다시 간접투자자에게로 전달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세법상 간접투자기구를 실체로 인식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르면, 법률상 법인은 별도의 실체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형태의 간접투자기구인 투자회사는 세법상 별도의 실체로 보아 과세된다. 반면에 법인형태가 아닌 간접투자기구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투자신탁으로 구분되며, 그 밖의 경우에는 특정신탁으로 구분된다. 투자신탁은 법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투자회사와는 달리 별도의 실체로 보지 않는다. 특정신탁은 일종의 신탁으로 보아 수익자를 과세주체로 본다.

이와 같이 간접투자기구의 설립 형식에 따라 세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

6) 투자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로 간접투자기구에서 검토한다.

다. 즉, 비록 투자회사가 법률상 법인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간접투자기구인 투자신탁과 간접투자기구의 설립과 운용 등 모든 면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는 투자회사의 경우 형식상 실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상 투자신탁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조정하는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⁷⁾에 두고 있다.

또한, 간접투자자가 배분받는 투자재산의 운용성과는 단순히 통로 역할을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통해서 전달받는다. 만약 간접투자자가 간접투자기구를 통해서 얻은 투자소득의 조세효과가 직접적으로 투자할 경우와 다르다면, 간접투자를 통한 조세 회피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간접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조세 효과와 간접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조세효과는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법에서는 간접투자자의 투자소득에 대해 일부를 비과세하여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일치시키고 있다.

둘째, 간접투자기구가 배분하는 소득은 ‘투자소득’으로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이 다르다. 간접투자기구가 배분하는 투자재산의 운용성과는 그 투자소득을 재원으로 한다. 투자소득은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같은 금융소득과 자본이득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투자소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으로 구성되는데,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달리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후의 소득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과세된 소득을 다시 과세소득에 포함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해 배당세액공제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다.

자본이득은 투자소득에 포함되어 있어 과세되는 소득으로 앞서 직접투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비과세되는 항목을 제외하면, 과세되는 금융소득(배당소득)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방법에는 문제가 있는데, 자본이득이 금융소득으로 전환되는 점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이득은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간접투자의 과정을 거치면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 금융소득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7) 租稅特例制限法 제91조의2

본고에서는 간접투자제도를 운영하는 주요국(영국, 미국 및 일본)의 조세제도를 연구하여 각 국가별로 간접투자기구의 실제 인정 여부와 직접투자와의 형평성 조정 및 이중과세조정 방법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서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간접투자 과세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 주요국의 간접투자 과세제도를 소개하고, 제Ⅳ장에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간접투자와 관련된 국제조세 제도를 검토한다. 제Ⅴ장에서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주요국의 입법례를 간략하게 정리한 후,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주요국의 과세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II. 우리나라 간접투자 과세제도의 현황

1. 간접투자제도

가. 간접투자와 간접투자기구

간투법상 ‘간접투자’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및 실물자산 등’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이러한 간접투자를 수행하는 자산운용의 주체를 간접투자기구(일명, ‘펀드’, 또는 ‘Investment Companies’) 등이라 하며, 간투법상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가 이에 속하게 된다⁸⁾.

간접투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간투법상의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와 같은 간접투자기구에게 자신의 자산의 소유권을 신탁 목적으로 이전하거나(투자신탁의 경우) 출자한 뒤(투자회사의 경우) 그 간접투자기구로 하여금 해당 자산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하게 하여, 그 투자대상 자산의 보유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수익의 분배금이나 배당금 등의 형태로 넘겨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라고 할 수 있다⁹⁾.

간접투자기구는 크게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신탁(Invest Trust-Contractual Type Fund)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이며¹⁰⁾, 이는 세법상 법인의 형태가 아닌 간접투자기구로 분류된

8) 間接投資資産運用業法 제2조; 손영철 외, 『간접투자세제』(자산운용협회), pp. 2~3.

9) 한만수 외(2005)

10) 間投法 제2조 3

다. 투자회사(Mutual Fund)는 회사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¹¹⁾. 따라서, 세법상 법인의 형태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투자전문회사(Limited Partnership)는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의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합자회사(PEF)를 말하며¹²⁾, 투자회사와 같이 세법상 법인으로 과세된다.

그리고, 간접투자를 펀드 설정지역 및 대상자산의 소재지에 따라 국제펀드와 국내펀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먼저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를 중심으로 국내펀드의 과세제도를 살펴본 후, 국제펀드의 과세제도를 살펴본다.

나. 간접투자기구의 분류

간접투자기구는 그 조직의 형태에 따라 계약형과 회사형으로 분류된다. 계약형은 간접투자기구를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설립하는 형태이고 회사형은 간접투자기구를 주식회사의 형태로 조직하여 투자자가 주주가 되는 형태이다. 일반적인 투자신탁은 계약형에 해당하며, 투자회사는 회사형에 해당한다.

간접투자기구는 수익증권 등의 환매가능 여부에 따라 개방형(open-end)과 폐쇄형(closed-end)으로 분류된다. 개방형(open-end)은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환매할 수 있는 형태이고 폐쇄형(closed-end)은 수익증권 또는 주식의 환매는 불가능하나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형태이다.

간접투자기구는 추가설정 여부에 따라 단위형(unit)과 추가형(open)으로 분류된다. 단위형(unit)은 당초의 원본에 추가설정이 불가능한 형태이고 추가형(open)은 추가설정(회사의 경우 증자)이 자유로운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간접투자기구는 편입대상 유가증권에 따라 주식형, 공사채형 및 혼합형으로 분류된다. 주식형은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이며 공사

11) 間投法 제2조 4

12) 間投法 제2조 4의2

채형은 국공채 및 회사채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이며 혼합형은 주식형과 공사채형을 혼합한 형태의 간접투자기구이다.

2. 간접투자기구 과세이론

신탁재산은 경제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구분되는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독립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신탁재산 자체를 세법상 독립된 과세단위로 보아 과세할 것인가를 두고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이론은 신탁실체설과 신탁도관설의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¹³⁾.

가. 신탁실체설

신탁실체설에서는 신탁재산 자체를 하나의 과세상 주체로 인정하고, 수익자가 신탁재산(신탁회사)으로부터 받은 신탁이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이 된다. 이는 신탁에 있어서의 법률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외형상으로도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며 법인의 구성원인 주주 등 사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배해주는 법인도 사실상 경제적 관점에서의 도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탁을 과세상 주체로 인정할 경우 외부에 나타나는 법적 형식에 따른 과세이기 때문에 과세처리가 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¹⁴⁾.

나. 신탁도관설

신탁재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신탁재산을 다만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귀속시키는 위한 도관으로 보아 신탁재산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그 수익자에게 개별

13) 이준호(2005)

14) 김재진 외(1998)

적으로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신탁재산을 독립적인 실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수단 또는 도관(conduit/pass-through entity)으로 보아 신탁재산 자체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 그대로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운용과정에서 발생된 소득의 내용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내용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신탁재산 운용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고, 수익자의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제3자(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또한 신탁수익 결정시에 신탁보수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신탁수익으로 계상하며,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과 같이 수익자 단계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전혀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다. 신탁실체설과 신탁도관설의 차이점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 중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중복과세의 문제, 과세의 절차, 시기, 과세대상 소득의 소득구분 등의 쟁점과 관련하여 차이점이 발생한다.

1) 중복과세의 문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은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소득이므로 실질적인 소득귀속자인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단계에서 과세대상소득으로 포착된다. 따라서 만일 신탁실체설에 의해서 신탁재산을 세법상 독립된 과세단위로 보고 형식적인 귀속자인 신탁자 또는 신탁재산에 과세를 하게 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한 중복과세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신탁을 도관(conduit)으로 보는 견해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별개의 과세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까닭에 동일한 소득에 대한 중복과세라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탁재산에 과세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과세표준 계산시 수익자에게 분배된 소득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게 되면 중복과세의 문제는 사실상 해결될 수 있다. 즉 중복과세에 대한 양 설

의 실질적인 차이란 신탁재산을 과세주체로 보지 않는 입장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아예 발생을 하지 않는 반면, 신탁재산을 과세주체로 보는 입장에 서서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를 피할 수 없다. 결국 이것은 입법정책의 문제가 된다.

2) 소득구분 등 구체적인 과세방법의 차이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을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 여부, 원천징수 및 시기, 종합과세 여부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소득의 구분에 관한 결정은 조세부담의 경중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신탁재산을 과세주체로 인정하는 경우 신탁재산 자체를 하나의 주체 내지 실체로 인정하므로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모든 신탁이익의 분배금은 마치 법인으로부터 받은 분배금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으로 본다.

신탁재산을 과세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신탁소득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수익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신탁재산 운용내용별로 그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며,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만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따라서 신탁에 귀속되는 소득의 종류가 과세소득이 아니면 수익자는 조세부담이 없게 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과세소득에 대하여는 신탁재산에 과세대상 소득을 획득했을 때 수익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면 된다.

3. 간접투자기구의 소득구분

현행 세법은 간접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간접투자기구의 종류에 따라 달리 구분하고 있다. 즉, 간접투자기구는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 포함)¹⁵⁾,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¹⁶⁾ 및 그 외의 신탁¹⁷⁾(이하, 특정신탁)으

15) 法人稅法 제2조 제1항 제1호, 法人稅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

16)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다(所得稅法 제17조 제1항 제5

로 구분된다¹⁸⁾.

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 포함)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므로 현행 세법상 투자회사의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투자회사의 소득으로 보며 이를 배분할 경우 배당금은 투자자의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반면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투자신탁을 별도의 과세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투자자의 소득으로 보며 이를 배분할 경우 배당금은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과 무관하게 투자자의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¹⁹⁾. 마지막으로 특정신탁의 경우 신탁을 별도의 과세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신탁자에게 과세된다²⁰⁾.

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 포함)와 투자신탁의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실물자산의 양도소득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소득을 분배받게 될 때에는 소득의 내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배당소득으로 간주한다²¹⁾.

호, 所得稅法 施行令 제23조 제3항).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의하여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2005.2.19. 법령개정)부칙

2.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1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함.

18) 所得稅法 제4조 제2항

19) 所得稅法 제17조 제1항 제5호

20) 所得稅法 제4조 제2항

21) 所得稅法 제17조 제1항 제5호

4. 투자자의 과세제도

가. 투자신탁형

1) 투자자의 납세의무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 과세된다. 다만, 투자신탁 외의 신탁의 이익(특정신탁)은 신탁업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2) 소득원천에 따른 소득 구분

투자자가 투자신탁으로 부터 얻은 소득은 그 투자신탁의 투자에 대한 소득원천(이자, 배당, 양도 등)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러한 세법상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은 자산운용관련 각종 보수,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²²⁾. 또한, 투자신탁의 이익에는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이 포함된다²³⁾.

투자신탁에서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수익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자본이득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성격의 소득이 간접투자를 거치면서 배당소득으로 단순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본이득과 같이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소득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변환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과세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①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유가증권, ②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²⁴⁾.

22) 所得稅法施行令 제23조

23) 所得稅法施行令 제23조 제2항

3) 과세소득 계산구조

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수입배당금(법인)이나 배당소득(개인)으로 구분되어 투자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하지만,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과세소득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단지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조항만 있다. 결국 투자신탁의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의 분배금이 투자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투자자의 과세소득은 대차대조표 접근방법으로 계산한다. 대차대조표 접근방법이란 과세대상 순자산의 증가분을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고, 반면에 손익계산서 접근방법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손익계산서 접근방법으로 투자자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경우에는 빈번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과세소득 계산을 위하여 거래 시점마다 결산과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투자자의 과세소득을 대차대조표 접근방법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즉, 투자자의 과세소득은 환매시점의 과세대상 순자산(환매시 과세가격²⁵⁾×환매좌수)에서 매입시점의 과세대상 순자산(매입시 과세가격×환매좌수)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산되며, 이를 대차대조표 접근방법이라고 한다. 결국 투자자의 과세소득은 과세가격 상승분을 출자좌수로 곱한 금액이다.

나) 개인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소득

투자신탁 이익의 분배금을 포함한 전체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그러나 전체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어, 4,000만원 이하

24) 안종석 외(2006); 所得稅法施行令 제23조 제4항

25) 이것을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음.

$$\text{과세가격} = (\text{순자산} - \text{비과세손익}) / \text{주식발행총수(총좌수)} \times 1,000$$

분은 14%의 세율을, 4,000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한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배분받은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인 투자자 단계에서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않는다²⁶⁾.

다) 법인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소득

법인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선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 따라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이익에 대해서는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한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분배받은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 투자자 단계에서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않는다²⁷⁾.

4) 원천징수

투자자(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²⁸⁾ 투자신탁은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의 14%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²⁹⁾. 다만, 투자신탁이 원천징수당한 채권이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에서 차감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투자자(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투자신탁은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의 14%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³⁰⁾. 다만,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신탁이 원천징수당한 채권이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에서 차감하거나 환급받게 되며, 원천징수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투자신탁의 수익

26) 所得稅法 제17조의 제3항, 所得稅法 제156조의 제1항

27) 法人稅法 제18조의3

28) ①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신탁의 해지일, 상환일 또는 환매일) 또는 ② 원본에 전입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에 전입된 날(결산일) 또는 ③ 신탁계약을 연장하는 날(신탁기간 연장일)에 원천징수 한다.

29) 所得稅法 제127조의 제1항 제1호, 제128조,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 2호

30) 法人稅法 제73조 제1항

을 받은 내국법인이 공제받게 된다³¹⁾.

나. 투자회사형

1) 투자자의 납세의무

세법상 투자자의 지위는 투자회사의 무액면 기명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소득세법상 또는 법인세법상 법인으로부터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³²⁾.

2) 소득원천에 따른 발생소득 구분

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별도의 실체가 있는 내국법인이다. 따라서 운용수익으로 인한 배당은 투자자(수익자)에게 배당소득 또는 수입배당금으로 분류된다³³⁾.

3) 과세소득 계산구조

가) 투자회사의 배당금

투자회사는 상법상 회사이나 실질적으로는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이 투자신탁과 동일하다. 따라서 투자신탁을 통한 간접투자와 투자회사를 통한 간접투자의 조세결과는 동일하여야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처럼 투자회사³⁴⁾의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³⁵⁾과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을 투자자의 출

31) 김선중 외, 『간접투자세제』(자산운용협회), p. 9

32) 김선중 외(2006)

33) 所得稅法 제17조의 제1항, 法人稅法 제15조

34)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함.

35) 다음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양도성 채권 등은 제외) 및 선물의 거래·평가로 인한 손익을 말함(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2 제1항)

자좌수에 따라 배분한 금액이다³⁶⁾. 투자자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도 역시 실무상 편의로 인해 대차대조표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투자회사가 결산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 주식을 환매³⁷⁾하여 투자자(주주)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투자자의 과세소득은 당해 회사의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당해 주식의 발행 후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 이전에 결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결산기준일 이후의 최초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계산된다³⁸⁾. 이를 과세가격으로 표시하면, 투자자의 과세소득은 환매(또는 결산)시점의 [과세가격³⁹⁾ × 출자(환매)주식수]에서 발행(또는 최종결산기준일)시점의 [과세가액(또는 최종결산기준일 이후의 최초과세가액) × 출자(환매)주식수]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유가증권양도차손이 유가증권양도차익을 초과하여 직전 결산시점에 기준가격을 투자한 원본금액 이하로 하락시키는 경우에 발행가액은 하락한 기준금액을 기초로 계산된 최종결산기준일 이후의 최초발행가액이 된다. 따라서 이후에 투자회사의 수익이 증가하여 기준가격이 원본금액까지 회복되어도 그 회복된 금액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일부를 제외하면 과세소득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자본이득을 초과한 자본손실은 이월하여 과세소득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다만, 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 유가증권양도차익 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양도차익 외의

①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유가증권(양도가능한 채권 등 제외)

②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③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중 위 ①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

36)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1항

37) 폐쇄형 투자회사가 개방형 투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

38)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6항

39) 이것을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음.

$$\text{과세가격} = (\text{순자산} - \text{비과세손익}) / \text{주식발행총수(총좌수)} \times 1,000$$

이익에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환매시에는 환매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이 당해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⁴⁰⁾. 즉, 자본손실은 자본이익에서 우선적으로 차감되며, 자본이익을 초과한 자본손실은 이월되지 않는다. 결국 이자·배당소득은 자본손실과 상계되지 않고 투자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반면에 투자회사의 과세소득은 손익계산서 접근방법에 따라 신고한다. 이는 투자회사는 그 자체로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일반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⁴¹⁾.

나) 개인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소득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을 포함한 전체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그러나 전체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어, 4,000만원 이하는 14%의 세율을, 4,000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한편, 내국투자회사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그 배당금액 자체가 배당소득 수입금액이 되며,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⁴²⁾. 따라서 개인투자자 단계에서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않는다.

다) 법인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소득

법인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선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 따라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한편, 내국투자회사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⁴³⁾. 따라서 법인투자자 단계에서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않는다.

40)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3항

41) 실제로는 명목상 회사의 도관성을 인정하여,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로 인해 법인세액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음.

42) 所得稅法 제17조 제3항, 所得稅法 제56조 제1항, 所得稅法施行令 제27조의2 제1항, 法人稅法 제51조의2

43) 法人稅法 제18조의3 제2항, 法人稅法 제18조의2 제2항 2호, 法人稅法施行令 제17조의2, 法人稅法 제51조의2

4) 원천징수

투자회사는 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지급기준일에, ② 투자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일에, 또는 ③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일에 원천징수한다.

국내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회사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시점이나 특약에 따른 원본전입일에 그 개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를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반면에 투자회사가 투자자(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는다⁴⁴⁾.

5. 간접투자기구의 과세제도

가. 투자신탁형

1) 투자신탁의 납세의무

투자신탁은 상법상 법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율하는 법인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투자신탁에 직접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⁴⁵⁾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규정한다⁴⁶⁾. 즉,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실체로서의 과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일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⁴⁷⁾.

44) 法人稅法 제73조 제1항

45)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

46) 法人稅法 제5조

47) 法人稅法 제73조 제2항

2) 소득원천에 따른 소득 구분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먼저 투자신탁에서 집계된 후 소득의 원천에 상관없이 배당소득으로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과정을 거친다. 투자신탁은 일종의 도관이므로 투자신탁에 귀속되는 소득은 이중과세 방지 및 직접투자와의 공평과세 측면에서 별도의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따라서 신탁투자에 귀속될 소득에 대한 소득원천상 구분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투자자의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수익에 대한 원천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투자기구는 불완전한 도관이라고 할 수 있다.

3) 원천징수 의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실체로서의 과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⁴⁸⁾. 다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일부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의 당해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이자소득 금액의 14%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⁴⁹⁾. 그러나 원천징수세액은 투자신탁이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⁵⁰⁾.

나. 투자회사형

1) 투자회사의 납세의무

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48) 法人稅法施行令 제111조

49) 法人稅法 제73조 제2항, 法人稅法施行令 제112조, 所得稅法 제46조

50) 法人稅法 제112조

관리장소를 둔 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어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 따라 투자자산의 운용으로부터 받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지급배당금 소득공제제도로 인해 실제 법인세를 부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즉, 세부담 측면에서는 투자회사를 실제로 보지 않고 도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소득원천에 따른 소득 구분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먼저 투자회사에서 집계된 후 소득의 원천에 상관없이 배당소득으로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신탁투자에 귀속될 소득에 대한 소득원천상 구분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법인세법상 이중과세 방지 규정인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배당금 관련 수익에 대한 원천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⁵¹⁾.

3) 과세소득 계산 구조

투자회사의 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계산 구조를 따른다. 따라서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한 후, 소득공제 등을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회사는 상법상 회사로 법인세 과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실체가 없는 일종의 도관으로 파악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를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와 배당시 지급배당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4) 원천징수 의무

투자회사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채권 등의 일부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51) 손영철 외, 『간접투자세제』(자산운용협회), p. 10

가능한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의 당해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된다⁵²⁾.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일부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의 당해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이자소득 금액의 14%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⁵³⁾. 그러나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은 투자신탁이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⁵⁴⁾.

52) 法人稅法施行令 제111조 제1항 제2호

53) 法人稅法 제73조 제2항, 法人稅法施行令 제112조, 所得稅法 제46조

54) 法人稅法 제76조 제3항 제4호

Ⅲ. 주요국의 간접투자 과세제도

1. 영 국

본고는 영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간접투자 과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하지만, 주로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 투자를 하는 투자신탁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벤처캐피탈 펀드나 부동산 펀드에 대한 과세제도는 이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간접투자 과세제도의 이해를 위하여 먼저, 영국의 간접투자 과세제도의 근간이 되는 투자신탁제도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다음으로 투자신탁에 관한 조세제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투자신탁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 기술한다.

가. 개관

1) 투자신탁제도의 역사

영국의 투자신탁제도는 1868년에 외국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에 투자한 신탁⁵⁵⁾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유한합자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가 간접투자기구로 인기를 얻었으나 1929년 경제공황 후에는 간접투자기구의 안전성과 수익권의 환금성이 중요하게 되어 단위신탁(Unit Trust)을 많이 사용하였다. 단위신탁(Unit Trust)은 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로 상장주식에 투자하고 투자의 환금성을 위하여 수익권⁵⁶⁾을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도록 한 간접투자기구이다.

55) Foreign and Colonial Government Trust, 1886년 설립, Investment Trust보다는 Unit Trust에 더 가까운 형태로 11년 후에 유한합자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로 전환됨.

56) 수익권(Unit)은 투자신탁의 순자산을 발행 좌수로 나누어 평가된다.

단위신탁(Unit Trust)산업의 규모는 비교적 소규모였으나 1950년대에 자본모집에 관한 규제가 풀리자 서서히 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1965년 금융법(Finance Act)에서 도입한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Tax on Long-term Capital Gains)와 법인세(Corporation Tax, CT)로 인해 단위신탁(Unit Trust)산업은 위축되었다. 1980년 금융법(Finance Act)에서 승인단위신탁(Authorized Unit Trust, AUT)의 자본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CGT)를 면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단위신탁(Unit Trust, UT)산업은 크게 도약하게 되었다. 현재는 승인단위신탁(AUT)과 승인투자회사(ITC)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승인단위신탁(AUT)은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가 되나 비승인 단위신탁은 자본시장에서 많은 제약이 있다. 또한, 다른 EU 국가에서 ‘집합적 투자를 위한 간접투자기구’⁵⁷⁾로 분류되는 역외펀드는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2) 투자신탁의 분류

영국의 투자신탁은 승인형 투자신탁과 비승인형 투자신탁으로 분류된다. 투자신탁이 2000년 금융서비스와 금융시장법(Finance Service and Markets Act)⁵⁸⁾ 제243조에 따라 설립되고 운용될 경우에 승인형 투자신탁으로 분류되고 승인형 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은 모두 비승인형 투자신탁으로 분류된다.

승인형 투자신탁은 다시 개방형 투자신탁과 폐쇄형 투자신탁으로 구성된다. 개방형 투자신탁에는 승인단위신탁(AUT)⁵⁹⁾과 개방형 투자회사(Open-Ended Investment

57)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s in transfer scheme

58) 2000년 금융서비스와 금융시장법(Finance Service and Markets Act)을 제정할 때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 Act) 제78조는 2000년 금융서비스와 금융시장법(Finance Service and Markets Act) 제243조로 대체됨(Finance Service and Markets Act, 2000, Schedule 20.).

59) AUT로 승인받기 위해서 신청자는 신탁증서 사본과 2000년 금융서비스와 금융시장법(Finance Service and Markets Act) 제243조를 준수하고 있다는 공증인의 공증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AUT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투자신탁의 수탁자나 관리자는 영국이나 다른 EEA 국가 내에서 거주하며 유한책임 을 지는 법적인 실체이어야 하며, 영국 내에서 사업장을 가져야 하며, 그들 각각의 사무는 영국 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또한 투자신탁의 관리자와 수탁자는 각각 관리자 또는 신탁자로서 행동하도록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

Company) 등이 있으며, 폐쇄형 투자신탁에는 승인투자회사(Approved Investment Trust Company, ITC)와 벤처캐피탈 투자신탁(Venture Capital Trusts, VCT) 등이 있다.

비승인형 투자신탁은 신탁, 파트너십, 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며, 비승인 단위신탁(Unauthorized Unit Trust)과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의 형태로 설립될 수도 있다.

3) 투자신탁 관련 현행 법령과 제도

투자신탁산업은 2000년에 제정된 금융서비스와 금융시장법(Finance Service and Markets Act)에 의한 투자사업(Investment Business)으로 분류되어 규제받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 설립된 법인형태의 투자신탁은 2006년 회사법(Company Act)에 의해서도 규제받는다. 상장된 투자신탁은 ‘증권 상장 허가 관련 규정’(Admission of Securities to List)에 의해 규제받는다.

승인단위신탁(AUT), 승인투자회사(ITC)와 벤처캐피탈 투자신탁(VCT)과 같은 승인형 투자신탁에는 조세지원제도가 존재하지만, 비승인형 투자신탁은 그러하지 못하다. 승인형 투자신탁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영국 내에 있어서 주요한 사무를 영국에서 수행하여야 하므로 해외투자펀드가 설립되어도 영국 내에서 투자자문과 관리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4) 투자신탁 관련 조세제도

영국의 내국법인은 그 법인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해서 소득법인세법(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한다. 여기서 ‘이익’이란 모든 수입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본이득도 또한 포함된다⁶⁰⁾.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은 회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와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다. 다만, 승인단위신탁(Authorized Unit Trust)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

60) sec. 6(4)(a),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용하나⁶¹⁾, 승인단위신탁(Authorized Unit Trust)과 투자신탁회사(Investment Trust Company)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CGT)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⁶²⁾. 또한, 해외에 투자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은 외국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세액을 공제한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그것의 출처와 관계없이 소득법인세법(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다. 영국의 소득세에서는 각각의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식인 구분과세시스템(Schedular System)이 사용된다. 소득은 근로소득(Schedule E), 사업소득(Schedule D), 부동산 수입소득(Schedule A), 이자와 배당금(Schedule F) 및 연금소득(Schedule E, D)으로 구성된다.

투자신탁이 투자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이자, 배당 및 자본이득으로 구성된다. 이자와 배당은 투자신탁의 소득(Income)으로 이를 투자자에게 배분할 경우 투자자가 배분받은 소득(Income)은 이자와 배당금(Schedule F)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나 투자신탁의 투자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은 자본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투자신탁은 대부분 자본이득을 배분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 혹은 자본손실은 투자신탁에 유보되어 단위(Unit) 또는 주식(Share)의 가치에 반영된 후, 투자자가 단위(Unit) 등을 환매할 때 단위(Unit) 등에 대한 자본이득세로 과세된다. 배당소득(Schedule F)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것으로 법인세 과세 후 소득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액을 계산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배당세액공제제도⁶³⁾를 통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5) 새로운 투자신탁 형태

61) sec. 468(1)(a),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62) sec. 100(1), 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

63)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배당액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소득에 산입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동액을 세액 공제하는 방식(Imputation System)

개인저축계좌제도(Personal Equity Plan, PEP)는 개인의 저축을 재원으로 영국에서 상장된 주식을 투자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제도로 1987년에 도입되었다. 이는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주로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였으며, 개인저축계좌제도(PEP)에서 발생한 소득과 자본이득은 모두 과세에서 제외된다. 1994년 이후에는 사채(社債)나 고정이자를 주는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범위가 확대되었다.

벤처캐피탈 투자신탁(VCT)은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벤처회사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비상장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1995년에 도입되었다. 벤처캐피탈 투자신탁(VCT)은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야 하며, 투자회사(Investment Trust)의 법인세법상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법인세의 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벤처캐피탈 투자신탁(VCT)의 투자자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벤처캐피탈 투자신탁(VCT)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이득도 배분받을 수 있다.

나. 간접투자기구의 과세제도

1) 개관

투자사업(Investment Business)은 투자자산⁶⁴⁾과 관련된 활동⁶⁵⁾을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투자신탁은 투자사업(Investment Business)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간접투자기구로 투자사업을 한다는 점에서는 투자회사의 성격이 있고, 직접투자하지 아니하며 신탁 등의 과정을 거쳐 간접적으로 투자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간접투자의 성격이 있다.

가) 투자사업(Investment Business) 관련 세제

64) 주식, 사채(社債), 공채,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집합투자기구의 단위(unit) 및 파생상품 등. Companies Act 1989

65) 투자자산의 거래, 투자자산의 중개, 투자자산의 관리 및 투자자문을 포함함. Companies Act 1989

투자사업(Investment Business)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의 과세제도는 소득(Income)과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과세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투자회사가 투자사업을 수행한 결과 발생한 소득(Income)은 배당소득(국외원천 배당소득(FID) 포함)과 이자소득으로 구성된다. 내국법인의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배분받은 배당금(국외원천 배당소득은 제외)은 이미 내국법인 단계에서 과세되었으므로 투자회사 단계에서는 추가적으로 법인세⁶⁶⁾가 과세되어서는 아니 되는 소득이다. 이와 같이 투자회사의 소득 중 법인세가 이미 납부된 소득을 배분받은 경우 그 배분받은 금액과 그 소득으로 인해 투자자가 공제받을 세액의 합계액을 ‘과세된 투자소득(Franked Investment Income, FII)’이라고 한다⁶⁷⁾. 여기서 ‘과세된 투자소득(FII)’이란 영국 국세청에 의해서 과세된 소득을 의미하므로, 국외원천 배당소득(FID)과 이자소득은 과세된 투자소득(FII)이 아니라 ‘과세되지 않은 소득(Unfranked Income, UI)’으로 분류된다. 해외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국외원천 배당소득(FID)은 한도내에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나, 과세된 투자소득이 아니므로 배당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외원천 배당소득(FID)과 이자소득⁶⁸⁾은 투자회사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며 법인세가 과세된다.

투자회사가 투자자산의 운용 결과 발생한 자본이득(Capital Gain)은 원칙적으로 투자회사의 소득(Income)에 포함하여 과세소득을 구성한다. 다만, 승인단위신탁(AUT)은 소득법인세법(ICTA) 및 자본이득세법(TCGA)상 법인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신탁회사(ITC)는 법인이지만, 자본이득세에 관하여는 승인단위신탁(AUT)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회사의 관리비용(Management Expense)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회사는 과세소득에서 관리비용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배당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66) ss. 208, 238(1),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67) 과세된 투자소득(Franked Investment Income)은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법인세 해당액을 세액공제의 형태를 차감함. 따라서 실질적으로 법인세는 면제됨.

68) 투자자산으로부터 실현된 이자소득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회사가 수취한다면,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다만, 이자소득을 금융기관 등(일반 법인 포함)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은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간접투자 관련 세제

투자신탁은 투자자⁶⁹⁾를 대신해 투자자산을 보유, 운용하고 그 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원칙적으로 투자신탁은 투자자의 자산을 운용하는 데 사용되는 도관으로 그 실체가 인정될 수는 없다. 하지만, 자본시장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금융서비스와 금융시장법(Finance Service and Markets Act) 제24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신탁(예를 들어, 승인단위신탁(AUT))에 대해서는 도관으로 간주하지 않고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여한다.

도관으로 간주하는 투자신탁(예를 들어, 비승인 단위신탁(Unauthorized Unit Trust, UI)의 경우,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Income)은 원칙적으로 수탁자(Trustee)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⁷⁰⁾. 수탁자(Trustee)는 별도의 개인으로 간주되어 투자신탁의 소득에서 관련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 투자자(Unitholder)를 위하여 소득세를 대납한다. 투자자(Unitholder)는 투자신탁의 세후 소득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받는다⁷¹⁾.

반면에 법인격이 인정되는 투자신탁(예를 들어, 승인단위신탁(AUT), 투자신탁회사(ITC), 벤처캐피탈 투자신탁(VCT) 등)의 경우, 투자신탁에 발생하는 소득(Income)은 원칙적으로 투자신탁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투자자(Unitholder 등)는 투자신탁과 분리되는 개인이며, 투자신탁이 투자신탁의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법인세를 공제한 후의 잔액을 배분할 경우에는 투자회사(Investment Business)인 투자신탁은 배분된 소득의 원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다만,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제외).

2) 승인형 투자신탁

승인형 투자신탁 중 대표적인 승인단위신탁(AUT)과 투자신탁회사(ITC)의 과세제

69)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 승인단위신탁(AUT)의 경우에는 단위보유자(Unitholder), 투자신탁회사(ITC)의 경우에는 주주를 의미함.

70) sec. 469(2),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71) sec. 469(3),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도를 다음에서 설명한다.

가) 승인단위신탁(AUT) 관련 과세제도

승인단위신탁(AUT)은 개방형 투자신탁으로 소득법인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승인단위신탁(AUT)의 경우,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이므로 다음과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승인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며, 자본이득을 투자자(Unitholder)에게 배분할 수 없음. 또한, 일부 선물과 옵션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거래이익(Schedule D, Case I)도 과세되지 아니 함⁷²⁾.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승인단위신탁(AUT)에서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승인단위신탁(AUT)의 과세소득에 제외되며 원천징수되지 않음. 한편, 동 소득을 배분할 경우 투자자(Unitholder)는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국외원천 배당소득(FID) 및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임. 하지만, 국외원천 배당소득(FID)을 분배할 경우 과세된 투자소득(FII)이 아니므로 비록 투자신탁 단계에서 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Unitholder)는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이자소득을 분배할 경우에도 과세된 투자소득(FII)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임. 다만, 채권형 단위신탁⁷³⁾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분배된 금액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함.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소득(Gross Profit)에서 관리비용⁷⁴⁾을 공제할 수 있으며 적용해야 할 법인세율은 20%임.
- 승인단위신탁(AUT)이 투자자에게 지급한 분배금(Distribution)은 일반 배당소득, 국외원천 배당소득(FID) 및 이자소득으로 구분하고, 국외원천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은 20%를 원천징수 함.

72) sec. 468AA,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Reg. 11(1) SI, 1977/1154

73) 투자자산에서 채권, 채무증권 등 이가지급 조건부 투자자산에 대한 비중이 60% 이상인 투자신탁을 채권형 투자신탁이라고 함.

74) 관리비용에는 운용보수도 포함됨.

결론적으로 승인단위신탁(AUT)은 소득법인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되며, 채권형 단위신탁의 경우에는 국외원천 배당소득(FID)이 관리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소득이 있다.

나) 투자신탁회사(ITC) 관련 과세제도

투자신탁회사(ITC)는 소득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Investment Trust)⁷⁵⁾으로 간주되는 회사이다⁷⁶⁾. 하지만, 투자신탁회사(ITC)의 경우,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투자회사이므로 다음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자본이득을 투자자(Shareholder)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투자신탁회사(ITC)에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신탁회사(ITC)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며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한편, 동 소득을 배분할 경우 투자자(Shareholder)는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국외원천 배당소득(FID)과 이자소득은 법인 실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됨. 국외원천 배당소득(FID)과 이자소득을 투자자(Shareholder)에게 분배할 경우에는 분배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 세율은 20%임.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소득(Gross Profit)에서 관리비용⁷⁷⁾을 공제할 수

75)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계약을 투자신탁(Investment Trust)이라고 함.

- (a) 세법상 영국(UK)의 내국법인이어야 함.
- (b) 폐쇄형 회사(Close Company)가 아니어야 함.
- (c) 런던주식거래소에 상장되어야 함.
- (d) 투자신탁의 소득이 지분 및 증권 또는 적격의 부동산 임대로부터 발생한 소득일 것
- (e) 투자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것을 초과하는 소득을 분배한다는 것을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기술하지 않아야 함.
- (f)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15% 이상 개별 기업에 투자하지 않아야 함.
- (g) 회계연도 중에 주식 또는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최소 85%를 배분하여야 하며, 나머지 소득의 경우 그 전액을 배분하여야 함. 즉, 주식 및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15%만 유보가능함.

76) sec. 842,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77) 관리비용에는 운용보수도 포함됨.

있으며 적용해야 할 법인세율은 33%임.

투자신탁회사(ITC)는 회사법(Company Act)에 의한 회사로 실체(Entity)를 가지므로 소득(income,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제외)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소득을 재원으로 투자자(Shareholder)에게 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원천과 상관없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예외적으로 투자신탁회사(ITC)의 도관성(導管性, Pass-through)을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3) 비승인형 투자신탁

비승인형 투자신탁 중 대표적인 단위신탁(UT)은 엄격한 의미에서 신탁이다. 따라서 단위신탁(UT)의 운용과 투자자(Unitholder)의 지위는 신탁계약에 따라야 하며 단위신탁(UT)의 과세제도는 신탁의 과세제도에 따라야 한다. 단위신탁(UT)에서 발생하는 소득(Income)과 자본이득(Capital Gain)은 원칙적으로 수탁자(Trustee)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수탁자(Trustee)는 별도의 개인으로 간주되어 투자신탁의 소득에서 관련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 투자자(Unitholder)를 위하여 소득세를 대납한다. 다만, 투자자(Unitholder)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위신탁(UT)은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대납하지 않는다⁷⁸⁾.

다. 투자자의 과세제도

1) 개관

투자자(Unitholder 또는 Shareholder)는 간접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의무를 부담한다. 간접투자로 인한 소득은 간접투자기구에서 투자한 자산의 운용성과를 배분받을 경우에 발생하고, 간접투자기구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의 처분으

78) sec. 100(2), Taxation of Capital Gains Act 1992

로 인한 자본이득이 생길 경우에도 발생한다. 따라서 투자자의 과세제도는 간접투자 기구로부터의 배분금액과 관련한 과세제도와 수익증권⁷⁹⁾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과 관련한 과세제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투자사업과 관련된 세제의 적용을 받으며, 후자는 수익증권(또는 주식)을 통한 간접투자자와 관련된 세제의 적용을 받는다.

가) 투자사업(Investment Business) 관련 세제

투자자가 간접투자기구로부터 수취한 분배금은 배당소득(Schedule F)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⁸⁰⁾. 분배금은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방식을 달리한다. 먼저 내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에게 적격한 분배금(Qualifying Distribution, 이하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칭함)⁸¹⁾을 지급하는 경우 동 분배금은 지급한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배당의 재원으로 한 것이므로 투자자 단계에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투자자의 경우 임퓨테이션(Imputation) 방식에 의해서 배당금의 10%를 배당소득 수입금액 계산시 가산한 후 세액공제에 포함시킨다. 또한, 법인투자자의 경우 동 배당금은 면제투자소득(FII)으로 법인투자자의 과세소득 계산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간접투자기구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간접투자기구에서 배분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거주자에게 분배(Foreign Income Dividend, FID, 국외원천 배당소득)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⁸²⁾. 배당세액공제는 오직 내국법인이 적격한 배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⁸³⁾. 다만, 영국(UK)과 관련된 일부 비거주자⁸⁴⁾의 경우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⁸⁵⁾에 따

79) 단위신탁의 경우에는 단위(Unit), 투자신탁회사의 경우에는 주식(Share) 등.

80) sec. 20(1)1,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81) 다음의 2가지 배분을 제외한 모든 분배이 적격한 분배(Qualifying Distribution)임. sec. 14(2),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a) 보상 상환주식(Bonus Redeemable Share), 보상 증권(Bonus Securities)의 발행으로 배분하는 경우.

(b) 다른 회사로부터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보상 상환주식(Bonus Redeemable Share), 보상 증권(Bonus Securities)을 배분받은 회사가 주식이나 증권으로 배분하는 경우.

82) sec. 14(1),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83) sec. 231(1),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84) sec. 231,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를 경우, 배당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국외원천 배당소득 금액은 수취한 배당소득 금액에 최저 소득세율로 Gross-up하여 계산하며⁸⁶⁾ 외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 배당소득(FID)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과세된 배분(Franked Payment)’⁸⁷⁾이 아니므로 면제투자소득(FII)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⁸⁸⁾.

나) 간접적 투자와 관련한 세제

자본이득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보는 간접투자기구⁸⁹⁾의 경우, 투자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자본손실 포함)은 비과세되며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배분되지 않는다⁹⁰⁾. 따라서 투자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포함되어 평가된 수익증권⁹¹⁾은 주식으로 보아 환매나 처분 시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⁹²⁾. 결과적으로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투자신탁에 누적되어 수익증권의 처분 시에 누적적으로 과세된다. 이는 자본이득 관련 세제를 소득(Income) 관련 세제와 구분하는 영국의 세법상 특성을 간접투자기구에도 일관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접투자기구를 별도의 실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신탁계약으로 보아 수탁자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소득세를 대납한다. 또한 수탁자는 영국에서 설정된 신탁에서 배분한 배당금을 수취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 소득과 관련하여 직접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⁹³⁾.

85) SI. 1973/317

86) sec. 246D(2)(a),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Added by FA 1994, Sch. 16, para. 1.

87) 적격한 배분금액(Qualifying Distribution)과 그 배분된 금액의 선납법인세(ACT)의 합계 금액, sec. 238(1),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88) sec. 246E,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Added by FA 1994, Sch. 16, para. 1.

89) 승인투자신탁(AUT)과 투자신탁회사(ITC) 등.

90) 승인형 투자신탁의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투자자에게 배분되지 않음.

91) 단위신탁의 경우에는 단위(Unit), 투자신탁회사의 경우에는 주식(Share) 등.

92) sec. 98(1)(b), Taxation of Capital Gains Act 1992

93) sec. 231(4),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2) 승인형 투자신탁

가) 승인단위신탁(AUT)의 투자자 관련 세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을 투자자(Unitholder)에게 배분하는 경우,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배당소득의 수입금액은 배분금액과 임퓨테이션(Imputation) 방식에 의해서 배분금액의 10%를 Gross-up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된다⁹⁴⁾.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거주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율(Lower rate)과 기본세율(Basic rate)이 적용되는 거주자의 배당소득세율은 10%이며, 고율(Higher rate)이 적용되는 거주자의 배당소득세율은 32.5%이다. 10% Gross-up된 금액은 배당세액공제 된다⁹⁵⁾. 한편,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동 배당소득은 면제투자소득(FII)으로 분류되어 투자자인 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따라서 배당소득으로 인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외원천 배당소득(FID)과 이자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을 투자자(Unitholder)에게 배분하는 경우, 투자신탁은 배당소득세를 세율 20%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형 단위신탁⁹⁶⁾에서 발생하는 배분금액은 통상 이자소득으로 구분되며, 일반 이자소득처럼 세율 20%로 원천징수된다. 채권형 단위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이 대부분 이자소득이라는 점과 이자소득을 배분할 경우 동액을 투자신탁의 과세소득에서 공제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채권형 단위신탁 단계에서 과세되는 소득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투자자(Unitholder)는 투자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자본손실 포함)을 배분받지 못한다. 다만, 투자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포함되어 평가된 수익권⁹⁷⁾을 환매나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CGT)를 부담하여야 한다⁹⁸⁾.

94) sec. 20(1)2,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95) sec. 231(4),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96) 투자자산에서 채권, 채무증권 등 이자지급 조건부 투자자산에 대한 비중이 60% 이상인 투자신탁을 채권형 투자신탁이라고 함.

97) 단위신탁의 경우에는 단위(Unit), 투자신탁회사의 경우에는 주식(Share) 등.

98) sec. 98(1)(b), Taxation of Capital Gains Act 1992

나) 투자신탁회사(ITC)의 투자자 관련 세제

투자신탁회사(ITC)는 회사법(Corporation Tax)에 의한 회사이므로 분배된 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을 투자자(Shareholder)에게 배분하는 경우,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배당소득의 수입금액은 배분금액과 임퓨테이션(Imputation) 방식에 의해서 배분금액의 10%를 Gross-up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된다⁹⁹⁾.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거주자의 적용세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율(Lower rate)과 기본세율(Basic rate)이 적용되는 거주자의 배당소득세율은 10%이며, 고율(Higher rate)이 적용되는 거주자의 배당소득세율은 32.5%이다. 10% Gross-up된 금액은 배당세액공제된다¹⁰⁰⁾. 한편,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동 배당소득은 면제투자소득(FII)으로 분류되어 투자자인 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따라서 배당소득으로 인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외원천 배당소득(FID)과 이자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 투자신탁은 배분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20%로 원천징수된다¹⁰¹⁾. 외국납부세액은 공제가능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투자자(Shareholder)는 승인단위신탁(AUT)의 투자자(Unitholder)와 동일하게 투자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자본손실 포함)을 배분받지 못한다. 다만, 투자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포함되어 평가된 수익증권¹⁰²⁾을 환매나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CGT)를 부담하여야 한다¹⁰³⁾.

99) sec. 20(1)2,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100) sec. 231(4),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101) 거주자는 배당과 이자소득 등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누진세율에 의해 최종적으로 과세된다. 국외원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경우엔 저율(Lower rate)과 기본세율(Basic rate)이 적용되는 거주자의 세율은 20%이며, 고율(Higher rate)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국외원천 배당소득(FID)의 경우에는 32.5%의 세율로,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40%의 세율로 과세된다.

102) 단위신탁의 경우에는 단위(Unit), 투자신탁회사의 경우에는 주식(Share) 등.

103) sec. 98(1)(b), Taxation of Capital Gains Act 1992

3) 비승인형 투자신탁

대표적인 비승인형 투자신탁인 비승인 단위신탁(UUT)은 일반적으로 도관으로 간주되어 비승인형 투자신탁에 발생하는 소득(Income)은 원칙적으로 투자신탁의 소득이 될 수 없다. 비승인 단위신탁(UUT)의 경우, 투자신탁의 소득과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수탁자(Trustee)의 소득과 자본이득으로 간주되며 수탁자(Trustee)는 관련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 계산한 소득세를 투자자(Unitholder)를 위하여 대납한다. 투자자(Unitholder)는 필요경비 등이 공제된 세후 소득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받는다¹⁰⁴⁾.

2. 미 국

가. 개관

1) 미국의 투자신탁제도의 연혁

미국의 투자신탁제도는 1920년대에 최초의 단위형신탁(Unit Trust)과 뮤추얼펀드(Mutual Fund)의 설립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뮤추얼펀드는 1924년 5월 보스톤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the Massachusetts Investors Trusts라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투자신탁관련법의 등장 전까지 1929년의 주식 붕괴와 경기불황(the Great Depression)은 이러한 투자신탁산업의 성장을 방해하였다. 마침내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각종 투자신탁관련 법령¹⁰⁵⁾이 정비되었고, 1933년 증권법의 도입과 1940년의 투자신탁회사법으로 도입으로 인해 투자신탁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다양한 상품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전후의 경기호황에 힘입어 산업자산의 꾸준한 성장을 이끌게 되었고, 투자신탁관련 순자산과 투자자의 순자산이 지속적으로 증

104) sec. 469(3),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105) the securities Act of 1933,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투자신탁의 순자산의 증가를 수치상으로 살펴보면 1920년대 동안 형성된 자산은 매우 적어서 1929년말의 순자산액은 140만달러였다. 그러나, 1940년대에는 448만달러가 되었고, 2004년대에는 8조 1천억달러가 되었다.

2) 신탁의 분류

미국의 신탁은 일반신탁과 투자신탁으로 크게 구분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신탁은 크게 명시신탁(express trust)과 법에 의해 설정되는 묵시신탁(implied trust)으로 구분된다. 이 중 명시신탁에는 생전신탁(living trust 또는 inter vivos trust), 유언에 의해 설정되는 유언신탁(testamentary trust), 자선신탁(charitable trust), 유사신탁(totten trust) 등이 있다.

그리고, 투자신탁을 크게 구분하면 뮤추얼펀드(Mutual Fund)와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투자신탁회사(Regulated Investment Company 이하 적격투자회사)를 통하여 신탁 재산이 투자되는 형태¹⁰⁶⁾를 의미하고, 후자는 부동산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합동운용신탁을 의미한다. 뮤추얼펀드는 개방형펀드(Open-End Fund)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개방형펀드는 펀드의 순자산의 공정시장가치에서 거래되고,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증권을 환매할 수 있는 펀드이다. 그 밖의 펀드로는 폐쇄형펀드(Closed-End Fund), 단위투자신탁(Unit Investment Trust, UIT) 및 교환 및 거래펀드(Exchange-Trade Fund, EIF)가 있는데, 폐쇄형펀드(Closed-End Fund)는 주식거래 또는 판매제한시장에서의 증권의 수가 고정되어 있는 펀드이다. 그리고, 폐쇄형펀드(Closed-End Fund)의 자산은 투자목적 및 국가정책과 일치되게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가격은 공정시장가치로 형성되고 있다.

단위투자신탁(Unit Investment Trust, UIT)은 투자회사가 주식, 채권 또는 다른 주식의 고정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신탁을 말한다. 신탁의 단위(Unit)는 투자자나 단위보유자(Unit holder)에게만 판매한다. 다른 투자신탁과는 다르게 단위투

106) 미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뮤추얼펀드를 통해서 펀드가 운용되고 있음.

자산신탁(Unit Investment Trust, UIT)은 고정된 만기날짜를 가지고 있다. 만기에 투자자는 단위투자신탁(Unit Investment Trust, UIT)의 순자산에 비례하는 부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상장지수펀드(Exchange-Trade Fund, ETF)는 전형적으로 개방형펀드(Open-End Fund)이거나 단위투자신탁(Unit Investment Trust, UIT)이다. 이 펀드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주식거래의 중간일자(intraday)에 거래된다. 상장지수펀드(Exchange-Trade Fund, ETF)는 분산투자 및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투자회사의 특징이 있지만 개인투자자가 구입하는 펀드와 같은 형식으로 거래된다. 즉,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회사의 증권처럼 투자자가 중개인을 통해 상장지수펀드(ETF)를 사거나 팔게 된다.

3) 투자신탁 관련 현행 법률과 제도

미국의 투자신탁에 대한 관련 법률은 기능별 규제에 입각한 법률이며, 종류는 네 가지 법률이 있다. 첫째, 투자회사법(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은 뮤추얼펀드 등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하고 있다. 둘째, 1933년의 증권법(The Securities Act of 1933)은 펀드주식등록, 투자설명서 공시, 광고내용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셋째, 증권거래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은 판매 관련 규제, 수탁과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보고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문법률(The Investment Advison Act of 1940)은 투자자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법률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감독 및 관리는 증권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다.

4) 신탁관련 조세제도

미국연방세법은 일반신탁에 대해서 크게 단순신탁(Simple Trust), 복합신탁(Complex Trust) 및 위임신탁(Grantor Trust)으로 구분한다. 단순신탁은 당해 소득을 모두 배당하는 신탁으로 도관체로 간주되며 수익자가 조세부담을 지는데 수익자

의 한계세율이 낮으며 절세효과가 높다. 반면 복합신탁은 수탁자가 임의로 소득을 유보할 수 있는 신탁인데 유보소득에 대한 조세가 단순신탁과는 다르게 처리되며 위임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모든 조세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일반신탁(Trust and Estates)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별도의 절인 Subchapter J에서 규정하여 세법상의 요건을 갖춘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분배되는 부분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는 신탁재산 자체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미국 연방세법에서는 뮤추얼펀드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Subchapter M에서 규정하여, 적격투자회사(Regulated Investment Companies, RICs)가 세법상의 일정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분배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후술하도록 하겠다.

나. 간접투자기구의 과세제도

1) 개관

미국의 경우 간접투자를 위하여 이용되는 간접투자기구는 다양하다. 간접투자기구의 설립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분류되는 간접투자기구와 파트너십으로 분류되는 간접투자기구 및 신탁으로 분류되는 간접투자기구로 구분된다. 법인으로 분류되는 간접투자기구는 법인의 형태로 설립된 뮤추얼펀드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세무상 일정요건을 갖춘 뮤추얼펀드는 적격투자회사(a regulated investment company)¹⁰⁷⁾로 분류하여 세무상 특칙을 주어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또한 신탁으로 분류되는 간접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파트너십과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되므로 본고에서는 적격투자회사(a regulated investment company)로 분류되는 뮤추얼펀드와 파트너십으로 분류되는 간접투자기구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107) 적격투자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총소득의 90% 이상이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판매로부터 발생된 배당, 이자, 이익이어야 한다.
- 3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 유가증권 및 특정한 다른 투자로부터 발생된 총소득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 적격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이나 유가증권이 단일 주식 및 단일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기업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뮤추얼펀드는 적격투자회사(RIC)가 투자자들에게 모은 투자금액을 가지고 다양한 투자와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투자상품을 일컫는다. 비록 적격투자회사(RIC)는 세법상 법인으로 분류되어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급분배공제제도¹⁰⁸⁾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납부할 법인세는 경감된다. 다만, 분배되지 않은 소득은 간접투자기구의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이는 뮤추얼펀드가 간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산을 연결하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의 성격이 있음을 세법에서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결국, 연방세법은 적격투자회사나 뮤추얼펀드를 ‘도관(conduit)’으로 보아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서 도관으로 취급한다는 의미는 펀드 자체의 고유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당으로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과세형식은 법인이 펀드에 투자 후 받는 배당소득에는 최초 법인세가 과세되고, 이 부분이 해당 펀드소득으로 구성되어 두 번째로 법인세가 과세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펀드가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소득은 투자자 단계에서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가 세 번째로 과세되어 발생하는 삼중과세(triple taxation)를 제거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파트너십은 투자사업을 위하여 설립될 수 있고, 투자회사법(ICA of 1940)에 따라 투자회사로 분류될 수도 있다. 만약 파트너십이 투자회사로 분류되고, IRC Subchapter M에 따른 적격투자회사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그 파트너십은 적격투자회사(RIC)로 보아 과세된다. 또한, 적격투자회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파트너십은 일반 파트너십의 과세제도(Subchapter M)에 따라 과세된다.

2) 뮤추얼펀드의 과세제도

미국연방세법에 따르면, 뮤추얼펀드는 법률상 별도의 실체로 인정되는 법인이다. 따라서 뮤추얼펀드는 독립된 납세의무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뮤추얼펀드의 도관성으로 인해 일정 요건¹⁰⁹⁾을 충족할 경우, 뮤추얼펀드의 실체

108) 간접투자기구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간접투자자에게 배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접투자기구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

성을 부인한다.

또한 펀드세제에서는 투자로 인한 발생하는 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자본 이득과 엄격히 구분한다. 뮤추얼펀드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뮤추얼펀드의 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지급배당 공제제도로 인해서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없다. 이는 뮤추얼펀드를 ‘도관’으로 보아 과세하는 펀드세제의 특성 때문이다. 또한, 자본이득은 영국의 세법과는 달리 간접투자기구 단계에서 배분할 수 있다. 자본이득은 배분 여부에 따라서 배분된 자본이득과 유보된 자본이득으로 구분되지만, 간접투자기구 단계에서는 과세에서 제외되며, 궁극적으로 간접투자자 단계에서만 과세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세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분배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¹¹⁰⁾하지 않는다.

가) 적격투자회사(RIC) 세제(Subchapter M)의 적용요건

뮤추얼펀드의 실체성을 부인하고 ‘도관’으로 보아 과세하는 세법규정들을 적격투자회사(RIC) 세제라고 하며, 적격투자회사(RIC) 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펀드는 당해 과세연도의 전체에 걸쳐 반드시 투자회사법(ICA of 1940)상 운용투자회사로 등록되어야 한다. 둘째, 펀드는 적격투자회사에 대한 세법상 규정을 적용하여 도관(Conduit)과 유사한 형태로 과세될 것을 신고하여야 한다. 셋째, 과세연도 동안에 펀드 총소득의 최소 90% 이상이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¹¹¹⁾, 증권의 양도 또는 기타 공탁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과 외환차익 및 증권 또는 외환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투자소득¹¹²⁾을 원천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이때 총소득을 구성함에 있어서 면세이자소득은 포함하지만, 증권의 양도로 인한 손실은 제외한다. 넷째, 과세연

109) Subchapter M의 851조~855조

110) 다만, 뮤추얼 펀드를 포함한 소득지급인이 소득수령인의 정당한 납세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때와 IRS로부터 소득수령인의 납세번호가 맞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backup Withholding을 하여야 함.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111) 또한 펀드의 명의로 증권 차입으로 받게 되는 모든 소득을 포함

112) 옵션, 선물 또는 선도 계약 등

도 각 분기 말에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로 평가한 펀드의 자산 중 최소 50%는 반드시 현금 등의 자산¹¹³⁾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펀드는 단일 발행자의 증권¹¹⁴⁾과 펀드가 지배(의결권의 20% 이상)하고 동일사업 또는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둘 이상의 발행자의 증권에 25% 이상 투자할 수 없다. 여섯째, 상기 조건들을 만족하는 적격투자회사는 또한 Subchapter M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던 과세기간에 유보금 및 준비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펀드는 일정 과세연도 동안 펀드의 일반소득과 면세이자소득의 최소 90%를 주주들에게 반드시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이득 부분의 분배에 대해서는 최소 분배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 일반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소득의 원천으로 한 뮤추얼펀드의 과세소득은 IRC §852(b)에서 규정하고 있다. IRC §852(b)에서는 통상 법인세율로 과세되는 과세소득, 다시 말해 펀드의 일반소득에 대한 과세소득은 펀드소득에서 지급배당금¹¹⁵⁾ 등을 공제하여 과세소득¹¹⁶⁾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의 조건을 충족하여 펀드세제를 적용받은 뮤추얼펀드는 당해연도 배당 및 이자소득의 90%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경우에 배분된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이를 지급배당 공제제도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할 경우, 뮤추얼펀드가 실제로 납부하는 법인세는 없게 된다. 이는 뮤추얼펀드가 법인세를 납부하여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게 한다.

다) 자본이득과세(분리과세)

미국의 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다. 수익자들에게 배분된 당해 연도의 자본이득은 투자회사 차원에선 비과세이다. 투자신탁회사의 당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90% 이상이 수익자

113) 현금 및 현금등가물, 미국 정부 채권, 적격투자회사의 증권 및 기타 증권(다만, 단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펀드자산의 5% 초과하거나 증권발행 법인의 의결권을 가지 발행 증권 중 10%를 초과하는 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제외)

114) 다만, 미국정부 채권 또는 기타 적격투자회사의 증권은 제외

115) 자본이익과 면세채권이자 배당금은 제외

116) 일반 법인세 과세소득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순자본이익 - 영업손실 + (지급배당 - 분리과세배당 - 면세채권이자배당)}

에게 배당금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반면 양도차익소득은 투자신탁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유보될 수도 있다. 유보 자본이득이 발생할 경우의 과세방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단계로서, 유보 자본이득에 대해 펀드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된다. 이때 부과되는 법인세는 순순하게 펀드 차원에서 결정되며, 서울도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되나 최고세율은 34%를 한도로 하고 있다.

둘째 단계는, 펀드의 수익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과세된 유보 자본이득금액과 납부되는 세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수익자는 통보받은 유보 자본이득과 세액을 본인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자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펀드가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¹¹⁷⁾.

3) 투자 파트너십의 과세제도

UPA §6(1)은 파트너십을 “2인 이상의 사람에 의하여 공동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로서 주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명의 파트너들에 의해서 소유된다는 점에서 개인기업과 다르며, 법인격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 도관(Conduit)이라는 점에서 법인(Corporation)과도 다르다.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제도는 원칙적으로 IRC Title 26, Subchapter K,를 따라야 한다. 다만, 파트너십에 의해서 수행되는 사업이 투자(investment)에 관련된 경우 이의 실질을 파악하여 적격투자회사(Registered Investment Company) 규정인 IRC Title 26, Subchapter M,을 적용한다.

또한, 공개된 파트너십(Public Traded Partnership)은 세무상 법인(Corporation)¹¹⁸⁾으로 보아 과세된다. 다만, ① 파트너십의 투자자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 파트너십이 지분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사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¹¹⁹⁾, 그리

117) IRC §852(b)(3)에 따라, 유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저율의 자본이득관련 법인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배당금은 과세기간 종료 후 60일 내에 서면통지와 함께 펀드주주에게 우송된 것을 말하며, 펀드의 양도차손은 당기 이후의 양도차익으로부터 8년간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118) IRC §7704(a),(b)

고 ③ 파트너십이 IRC §851(a)에 따른 적격투자회사(RIC)로 분류되지 않을 때 수동투자수익(Passive Investment Income)이 9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파트너십은 세무상 법인으로 보지 않고 파트너십으로 본다.

합자회사(LLC)나 신탁(Trust)으로 설립된 국내(외국)의 실체는 파트너십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가) 투자 파트너십의 분류

파트너십이 ① 투자회사법(ICA of 1940)상의 투자회사에 해당되고 적격투자회사(RIC)의 적용요건에 해당될 경우, 파트너십은 적격투자회사에 대한 세법(Subchapter M)이 적용되고, ②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공개된 파트너십(Public Traded Partnership)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과세되고, 마지막으로 ③ 앞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트너십으로 보아 파트너십 과세제도(Subchapter K)가 적용된다.

적격투자회사로 보는 파트너십은 Subchapter M이 적용되고, 법인으로 보는 파트너십은 법인세의 일반 세법규정이 적용된다¹²⁰⁾. 따라서 아래에서는 파트너십으로 분류되는 투자 파트너십¹²¹⁾에 대한 과세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나) 투자 파트너십의 세무

투자 파트너십의 세무는 기본적으로 일반 파트너십의 세무를 적용한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설립된 파트너십(LLC, GP 등)은 Check-The-Box Rule에 따라 법인의 과세방법이나 파트너십의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이 없는 경우 파트너십으로 분류된다. 해외에서 설립된 파트너십(LLC, GP 등)도 역시 법인 혹은 파트너십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이 없는 경우 모든 파트너가 유한책임을 부담한다면 법인으로 분류된다.

119) Reg §1.7704-1

120) 따라서 현물을 파트너에게 배분(Distribution)하는 경우, 현물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121) 파트너십이 (i) 개별 자본계정 평가일에 파트너십이 적어도 파트너십의 비현금성 자산의 공정 시장가치 중 90% 이상의 적격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그리고 (ii) 파트너십이 Reg § 1.704-3(e)(3)에 따라 총액접근방법을 채택한 첫 사업연도의 종료시점에 적어도 연 1회 재평가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투자 파트너십(Investment Company)이다.

파트너십으로 분류된 실체는 과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파트너가 그 과세의무를 부담한다. 파트너 과세소득의 계산은 파트너십의 소득, 필요경비, 이익 및 손실을 파트너 지분에 따라 분배(allocation)하여 계산한다. 파트너십의 배분(Distribution)으로 인한 과세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이 점은 법인(Corporation)으로 보는 경우와 다르다.

투자 파트너십이 일반 파트너십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 파트너가 현물을 파트너십에 출자하고 파트너십 지분을 받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손익은 파트너십과 파트너 모두에게 실현되지 않는다. 다만, 파트너십이 법인화될 경우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 IRC §351에 따라)로 간주되는 파트너십에 출자한 자산의 이익실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¹²²⁾.
- 유가증권 파트너십¹²³⁾은 IRC §704(c)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적격 금융자산¹²⁴⁾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할 수 있다. Reg §1.704-3(a)(2)과 (a)(6)(i)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십이 총액방법을 사용한다면, 파트너십은 파트너십이 유가증권 파트너십으로 유지되는 모든 사업연도에 모든 적격금융자산에 대해 동일하게 총액방법을 적용하여 하며, 이 경우 파트너십은 각각 출자자산의 내포이익(Built-in Gain)과 내포손실(Built-in Loss)을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¹²⁵⁾.

다. 투자자의 과세제도

1) 개관

적격투자회사(RIC)는 단순히 ‘도관’에 불과하므로 적격투자회사(RIC)에서 발생되

122) IRC §721

123) 파트너십이 관리형 투자회사(Management Company)나 투자 파트너십(Investment Partnership)인 경우, 그리고 파트너십이 모든 장부상 배분을 파트너의 상대적인 장부상 자본계정(단, 관리서비스나 투자자문서서비스를 파트너십에 제공하는 파트너에게 특별히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경우는 제외)에 따라 수행할 경우에 파트너십은 유가증권 파트너십이다.

124) 적격금융자산은 (주식을 포함해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개인 자산이다. ‘활발하게 거래되는’이란 reg §1.1092(d)-1(일방에서 구입하고 타방에서 판매하는 거래를 목적으로 활발하게 거래하는 자산에 대한 규정)에서 규정되는 것과 같이 활발한 것을 말한다.

125) Reg §1.704-3(e)(3)(i)

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간접투자자에 귀속된다. 따라서 적격투자회사(RIC)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그 원천에 따라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된다. 적격투자회사(RIC)가 간접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소득은 크게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으로 구성되고 배당소득은 다시 그 소득의 원천에 따라 일반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및 면세이자 배당소득으로 구성된다.

반면에 법인으로 분류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는 법인의 주주로서의 과세의무를 부담하며, 파트너십으로 분류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는 파트너십의 파트너서의 과세의무를 부담한다.

2) 적격투자회사(RIC)의 투자자

가) 분배소득

(1) 일반배당소득

일반배당소득은 적격투자회사(RIC)의 총소득 중 분리과세 배당소득, 면세이자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을 제외한 후 간접투자자에게 배분한 소득이다. 일반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일반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간접투자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¹²⁶⁾. 일반배당소득은 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소득의 원천으로 하며, 이를 지급한 적격투자회사(RIC)는 지급배당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일반배당소득을 받은 간접투자자는 이를 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하지만, 한국이나 영국처럼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배당소득을 받은 법인투자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그 원천에 상관없이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적격배당금¹²⁷⁾을 수취하는 경우 그 배당금을 수취한 법인투자자는 투자한 지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70%를 공제받을 수 있다¹²⁸⁾.

126) 다만, 연방내국세법, 주법, 판례 등이 특별한 형태의 소득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방내국세법에서는 펀드주주에 대하여 장기자본이득이나 면세이자에 대한 자금이전을 인정하고 있다.

127) 내국법인이 적격하게 지급하는 배당금

128) IRC §243, IRC §246(c)(4)(C), IRC §854

(2)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이란 정책적 목적상 특정기업의 투자할 경우에 일반배당소득과 분리하여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이다.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소득세 일반세율보다 저율로 과세되며¹²⁹⁾, 소득세 신고시에도 일반배당소득과 구분하여 신고한다.

(3) 비과세채권이자 배당소득

적격투자회사(RIC)가 배분한 금액 중 그 원천이 비과세지방정부채¹³⁰⁾, 비과세연방정부채¹³¹⁾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일반배당소득과 별도로 구분하며 이에 대한 소득세는 면세된다.

나) 자본이득 분배

자본이득배당은 적격투자회사(RIC)가 과세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자본이득배당으로 서면통지에 의해서 지정하는 배당이다¹³²⁾.

자본이득을 획득한 적격투자회사(RIC)는 투자자(주주)에게 이를 분배할 수 있으며

129) 일반세율 적용시 25% 미만 세율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은 5%로 분리과세되며, 25% 이상 세율구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5%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분리과세 대상 배당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미국내 기업 또는 요건을 갖춘 외국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한한다.
 -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일정기간 이상 지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일정기간이라 함은 배당전 60일과 배당후 61일의 121일간의 기간 중에 60일 이상.

130) 면세지방채에 투자하는 회사는 연방조세가 면제되는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채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1976년부터 시작된 면세이자 분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펀드는 그 회계기간의 매분기말에 총자산의 50% 이상을 면세채권에 투자하고 있어야 한다. 연방조세가 면제되는 면세이자 분배금의 금액은 과세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주주에게 서면통지되어야 하며 그 통지된 금액만이 주주에게 면세이자로 간주된다. 펀드의 면세이자 분배금 중 일부는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의 적용대상이 된다. 즉, 펀드가 사목적채권인 지방채에 투자했을 경우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펀드는 주주에게 면세이자 배당금 중 사목적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131) 많은 주에서 연방 정부채에 투자한 펀드의 분배금 중 정부채이자 해당부분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분배금 중 연방정부채이자 부분을 구분, 통지하여야 한다. 연방정부채는 연방정부에 의해서 과세되나, 개인이 연방정부채에 직접 투자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한 주세는 일반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연방정부채에 투자한 펀드의 주주도 정부채에 대한 직접투자처럼 취급하여, 그 부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132) IRC §852(b)(3)(C)

이를 수령한 투자자(주주)는 적격투자회사(RIC) 주식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이를 장기자본이득으로 취급할 수 있다¹³³⁾.

적격투자회사(RIC)가 자본이득을 분배하지 않고 적격투자회사(RIC) 단계에서 법인세를 지불하더라도 자본이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다. 투자자(주주)는 과세연도 종료일에 회사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이 있는 과세연도의 세무신고에서 장기자본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적격투자회사(RIC)가 개별 투자자(주주)에 대해서 과세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자본이득배당으로 서면통지에 의해서 지정하는 지정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¹³⁴⁾. 적격투자회사(RIC)가 지불한 세금에 대해 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 주식 처분(또는 환매)

적격투자회사(RIC)의 주식이 처분되는 경우, 투자자(주주)는 자본이득이나 자본손실을 인식한다. 따라서 적격투자회사(RIC)의 누적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배당락일 현재 실제 배당을 지급받고 배당이 차감된 가격으로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처분된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이나 자본손실을 인식한다.

적격투자회사(RIC)의 주식이 환매되는 경우, 투자자(주주)가 인식하는 거래차익은 환매되는 규모에 따라 자본손익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¹³⁵⁾. 즉, 투자자(주주)가 적격투자회사(RIC)의 주식을 전부 환매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분율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처분으로 보아 자본이득이나 자본손실을 인식한다¹³⁶⁾.

3) 법인으로 보는 간접투자기구의 투자자

적격투자회사(RIC)로 분류되지 않는 뮤추얼펀드와 법인 과세를 선택하였거나 공개

133) IRC §852(b)(3)(B)

134) IRC §852(b)(3)(D)(i)

135) IRC §302

136) IRC §302(b)(2), (b)(3)

된 파트너십(적격투자회사로 분류된 것 제외)은 법인으로 보아 과세된다. 법인으로 보는 간접투자기구의 투자자는 세법상 주주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이중과세는 조정되지 않는다.

4) 파트너십으로 보는 간접투자기구의 파트너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소득, 필요경비, 이익 및 손실을 파트너 지분에 따라 분배(allocation)받으며 분배받은 금액에 따라 파트너별로 신고한다. 다만, 투자 파트너십에 출자한 현물의 자본이득은 일반 파트너십과는 달리 출자시 즉시 실현되며, 유가증권 파트너십으로 분류된 투자 파트너십의 과세소득은 순액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일 본

가. 개관

1) 일본 간접투자제도의 연혁

일본의 간접투자제도는 1937년에 영국의 단위신탁(Unit Trust)을 참고하여 설립한 파트너십(조합) 형태의 투자펀드로부터 시작되었다. 1951년에는 상장된 주식의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에 의해 주식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투자신탁이 시작되었고, 1961년에는 공사채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채투자신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증권투자신탁법이 1998년 6월 15일 증권투자신탁및투자법인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회사형 증권간접투자기구와 사모투자신탁제도가 도입되었고, 2000년 5월 31일 동법이 투자신탁및투자법인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증권 이외에 부동산을 포함한 특정자산을 운용대상으로 확대하였다.

투자신탁의 경우, 1964년 이래로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되지만 원천분리과세방식을

적용해 온 주식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에 대한 과세방식은, 2004년 개정에 의해 배당 소득과세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주식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은 종합과세의 대상으로 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신고불요제도¹³⁷⁾가 함께 도입됨에 따라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천징수 20%로 과세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일본의 간접투자제도는 투자신탁을 위주로 발전하였고, 투자신탁의 투자자를 신탁의 수익자로서 보호하는 규정이 발달하였다. 회사형인 투자회사보다 계약형인 투자신탁을 위주로 발전한 이유는 회사정보보다 계약형의 경우에 금융당국의 규제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투자신탁을 간접투자기구로 보기보다는 금융상품으로 보는 관점이 생겼다.

일본의 유가증권 투자신탁¹³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¹³⁹⁾.

- 펀드에 소액을 투자하여도 투자가 가능하다.
- 원본의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분산투자로 손실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
- ‘고위험/고수익’ 상품 또는 ‘저위험/저수익’ 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었다.

2) 간접투자기구의 분류

일본의 간접투자기구는 ‘투자신탁및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로 구성된다.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신탁약관이나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의미한다.

투자신탁은 위탁자의 지시 여부에 따라 위탁자 지시형 투자신탁 및 위탁자 비지시형 투자신탁으로 구분된다. 또한, 투자대상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주식투자신탁¹⁴⁰⁾과 공사채투자신탁으로 나눌 수 있다.

137) 신고불요제이란 일정한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대상이라도 확정신고를 요구하지 않던 제도이다. 2003년 개정에 의해서 대주주를 제외한 상장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불요제도의 적용상한액을 철폐하였다(일본 조특법 제8조의5 1항). 주식투자신탁의 경우는 2004년 개정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138) 주식투자신탁과 공사채투자신탁으로 구성된다.

139)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pp 562, IFA

140) 주식투자신탁은 단위형 주식투자신탁과 추가형 주식투자신탁으로 나뉜다.

증권투자신탁이란 주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로 운용하는 것(유가증권 지수 등 선물거래, 유가증권 옵션거래, 외국 시장 증권 선물거래, 유가증권 장외지수 등 선도거래, 유가증권 매장 옵션거래 또는 유가증권 장외지수 등 스왑(swap) 거래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이다¹⁴¹⁾.

투자법인은 자산을 주로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신탁및투자법인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사단을 말한다¹⁴²⁾. 이는 운용회사 등의 설립기획인이 투자회사(증권투자법인)를 설립해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고, 얻은 수익을 배당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형태의 간접투자기구이다. 출자된 자금의 운용이나 보관은 증권투자법인이 하지 않고, 운용회사가 별도로 하게 된다. 자산의 보관에 관련되는 업무는 신탁은행 등의 자산보관회사에서 맡게 된다.

3) 간접투자 관련 현행 법률과 제도

‘증권투자신탁법’이 1951년에 증권투자신탁의 제도를 확립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보호를 도모하여 일반 투자가에 의한 증권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1998년 12월에는 일본판 빅뱅(증권 분야의 규제완화나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업무 개정, 또 회계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상법 개정 등 국제규범 아래에서 폭넓은 금융상품을 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증권투자신탁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으로 명칭이 ‘증권투자신탁및증권투자법인에관한법률’로 바뀌었다. 개정된 법으로 인해 ‘계약형’ 외에 ‘회사형’이 간접투자기구로 인정되게 되었다. 2000년 11월에는 일본판 금융 서비스법 책정을 목표로 하여 투신법이 개정되었으며 명칭도 ‘투자신탁및투자법인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다. 이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신탁’이 포함되어 투자신탁의 대상이 유가증권 이외에 부동산(그 외의 자산)에까지 확대가 되었다. ‘증권투자신탁 및증권투자법인에관한법률’은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설립, 업무, 해산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41) 일본 ‘투자신탁및투자법인에관한법률’ 제2조 4항

142) 일본 ‘투자신탁및투자법인에관한법률’ 제2조 19항

증권거래법에서는 수익증권이나 주식의 모집과 투자자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다.

4) 간접투자 관련 조세제도

간접투자과 관련된 세제는 기본적으로 간접투자기구의 설립형태에 따라서 달리 규정된다. 첫째, 신탁형 간접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은 법인도 개인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도관으로 보아야 하지만 미국과 같이 완전한 도관(Conduit)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불완전한 도관’으로 보아 과세된다. 즉 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배당소득(증권투자신탁)이나 이자소득(공사채투자신탁)으로 과세된다.

둘째, 회사형 간접투자기구인 투자법인은 ‘투자신탁및투자법인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인실체로 인정되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간접투자기구의 도관성이 일부 인정되어 지급배당금에 대해서는 투자회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인정된다.

또한, 일부 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에 대하여 비과세제도가 인정되는 간접투자기구가 있다. 즉, 비과세제도가 인정되는 대상자¹⁴³⁾가 중기 국채펀드, MMF 등(이상 공사채 투자신탁) 및 운용기본방침에 ‘안정된 수익의 확보를 목적으로 해 안정 운용을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주식투자신탁으로 주식의 편입비율이 70% 미만으로 투자한 법인의 발행주식을 5%로 이하로 보유하고, 이러한 요건이 신탁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투자신탁에서 배분하는 수익분배금은 비과세한다.

나. 간접투자기구의 과세제도

1) 개관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세제는 간접투자기구의 설립형태에 따라 다르다. 투자신탁의 경우 수정된 도관으로 보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나 소득세법상 과세의 무가 없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세제는 주로 투자자의 소득세에 관하여 규정된다.

143) 65세 이상으로 유족·장애인 연금수급자, 모자 가정자 등

다만,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특정목적신탁과 투자신탁및투자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정투자신탁(둘을 합하여 이하 ‘특정신탁’)은 법인의 실체성을 인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¹⁴⁴⁾.

투자회사는 법인으로 실체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지급배당공제제도를 통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실제로 없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도관성(Pass-through)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투자신탁의 과세제도

가) 신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 투자신탁(특정투자신탁 제외)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인 투자신탁은 신탁자산에 발생하는 소득을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통로로서 법적인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신탁은 그 신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무상 신고할 의무도 없다. 반면에 신탁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투자자의 소득으로 보아 투자자에게 과세의무를 부담시킨다.

다만, 원천징수와 관련한 규정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상장된 투자신탁에 귀속되는 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

□ 특정투자신탁

특정투자신탁은 위탁자 지시형 투자신탁과 주로 국내에서 공모되는 수익증권에 관한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 모든 투자신탁이다. 특정투자신탁은 법률상 신탁이지만, 세법상 그 실질이 투자법인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를 적용한다. 다만, 특정투자신탁은 처분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소득에서 배당금을 공제한다¹⁴⁵⁾. 특정투자신탁은 법인으로 보아 신탁재산에서 발생

144) 일본 법인세법 제2조 29의3호, 제7조의2, 제82조의2

145)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68조의3의 3

한 소득으로 인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나) 분배금 지급에 관한 과세제도

투자신탁이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무행정의 편의상 투자신탁을 별도의 실체로 보아 투자자를 대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되는 과세항목과 세율은 아래 투자자의 과세제도에서 살펴본다.

3) 투자법인의 과세제도

가)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지분율이 25% 이상인 일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은 전액 익금불산입하고 지분율이 25% 이상인 일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은 50%를 익금불산입한다. 만약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될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전액 익금불산입된다.

투자법인¹⁴⁶⁾은 법인으로 실체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간접투자기구의 도관성을 수용하여 다음의 일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가 없도록 하였다¹⁴⁷⁾.

- 관련법에 의한 투자법인으로 관계기관에 등록되어야 한다.
- 투자회사의 설립 시점에 발행한 주식은 반드시 상장되어야 하고 공제된 주식가액은 100만엔 이상이어야 한다.
- 투자회사는 자산을 하나 이상의 투자자문회사나 자산보관회사에 의해서 보관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 일본 내에서 우선 주식이 발행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 과세기간 종료시점에 가족회사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 세무상 처분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와 해외의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된 세액은 법인세

146) 일본의 경우 투자법인은 실제적으로 뮤추얼펀드라고 볼 수 있다.

147)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68조의3의 3

법에서 규정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천징수 된다.

나) 분배금 지급에 관한 과세제도

투자회사는 별도의 실체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배당소득세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되는 과세항목과 세율은 아래 투자자의 과세제도에서 살펴본다.

다. 투자자의 과세제도

1) 개관

일본의 간접투자기구는 조세부담에 있어서 도관(Conduit)로 보아 실질적으로 부담할 세액을 제거한다. 하지만,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 발생하는 시점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시점에 과세된다는 점과 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투자기구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의 소득이 정하여진다는 점에서 완전한 도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

투자자의 과세제도는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의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먼저, 투자자가 받은 주식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과 투자법인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며, 공사채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투자자가 처분한 주식투자신탁과 투자법인의 주식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은 주식의 자본이득으로 분류되고 투자자가 처분한 공사채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채권의 자본이득으로 분류된다.

투자자가 분배받은 투자신탁수익의 과세소득은 개별원본¹⁴⁸⁾ 금액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¹⁴⁹⁾. 즉, 결산일의 기준가액(分配落後)이 개별원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금은 전액 보통 분배금이 전액 배당소득의 과세소득이 되나, 결산일의 기준가액(분배낙후)이 개별 원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분배금은 특별 분배금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되며 특별 분배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분배금이 보통

148) 수익자마다의 구입단가를 세법상 원본으로 보는 것이다.

149) 이를 개별 원본방식에 따른 과세소득금액 결정이라고 한다.

분배금이 되어 배당소득의 과세소득이 된다.

2) 투자신탁의 투자자

가) 분배소득

거주자인 투자자가 지급받은 공사채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¹⁵⁰⁾ 지급받을 시점에 20%¹⁵¹⁾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거주자인 투자자가 지급받은 주식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상장된 주식투자신탁 제외)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¹⁵²⁾ 20%¹⁵³⁾(다만, 2008년 3월말까지 상장된 증권투자신탁에서 배분하는 수익의 분배금은 10%)¹⁵⁴⁾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다만, 수익의 분배금이 개별 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 그 감소액은 특별분배금으로 과세에서 제외한다. 특별분배금을 수취할 경우 개별 원본을 수정한다. 또한 일본에서 설정된 공모주식투자신탁의 수익의 분배 등으로 확정신고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공제¹⁵⁵⁾를 적용한다¹⁵⁶⁾.

나) 자본이득

□ 수익증권(주식)의 상환(redemption, 해약청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주식)의 상환(해약청구)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의 과세제도는 투자신탁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150) 일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151) 이자소득세 15% + 주민세 5%

152) 일본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153) 배당소득세 15% + 주민세 5%

154) 배당소득세 7% + 주민세 3%

155) 일본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배당소득세액공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함.

156) 다만,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사모공사채 등 운용 투자신탁 등의 수익의 분배에 의한 배당, 국외사모공사채 운용 투자신탁 등의 배당, 적격 기관투자가사모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의 분배에 의한 배당, 특정 목적 신탁의 수익의 분배에 의한 배당, 특정 목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투자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확정신고 불요제도를 선택한 것 및 오픈형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의 분배 가운데, 신탁재산의 원본의 환불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배당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먼저, 공모주식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상환(해약청구)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은 기준가액과 개별원본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첫째, 기준가액이 개별원본을 초과한 경우 상환(해약청구)금액의 투자금액 초과분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배당소득금액의 20%(다만, 2008년 3월말까지는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분리과세한다. 둘째, 기준가액이 개별원본에 미달한 경우 원본의 상환(해약청구)손실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공모주식투자신탁의 상환(해약청구)금액에 의해서 생긴 상환(해약청구)손실은 간주양도손실로 취급되어 다른 공모주식투자신탁이나 주식 등의 매각이익과 손익통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공모주식투자신탁의 상환(해약청구)이익과의 손익통산은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공모공사채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상환(해약청구)으로 발생한 자본이득도 기준가액과 개별원본을 기준으로 달리 과세한다. 첫째, 기준가액이 개별원본을 초과한 경우 상환(해약청구)금액의 투자금액 초과분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둘째, 투자금액이 원본금액에 미달한 경우 원본의 상환(해약청구)손실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 수익증권(주식)의 양도(transfer, 매입청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주식)의 양도(매입청구)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의 과세제도는 투자신탁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먼저, 공모주식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한 자본이득은 기준가액과 개별원본을 기준으로 달리 과세한다. 첫째, 기준가액이 개별원본을 초과한 경우 양도(매입청구)금액의 투자금액 초과분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소득금액은 10%(다만, 2008년부터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분리과세¹⁵⁷⁾ 한다. 둘째, 기준가액이 개별원본에 미달한 경우 원본의 양도(매입청구)손실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매입청구)이득은 다른 공모주식투자신탁이나 주식 등의 매각손실(해약손실·양도(매입청구)손실 포함)과 통산할 수 있다.

157) 신고 분리 과세란, 연간(1월1일~12월31일)의 주식이나 공모 주식투자신탁 등의 매각이익에 대해, 다른 소득과는 합산 하지 않고, 확정신고에 의해 10%(소득세 7%, 주민세 3%)의 세율로 납세하는 구조이다.

다음으로, 공모공사채투자신탁의 자본이익은 비과세된다. 또한 공모공사채투자신탁의 양도(매입청구)손실은 양도(매입청구)이득과 통산되지 않는다.

3) 투자법인의 투자자

가) 분배소득

투자법인은 법인이므로 투자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다만, 투자법인의 주식이 상장된 경우에는 2009년 3월말까지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¹⁵⁸⁾. 또한, 일본에 본점이 있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잉여금의 배당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당공제를 적용한다¹⁵⁹⁾. 다만,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항에 규정하는 투자법인으로부터 지분을 받아야 할 배당 등에 대해서는 배당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¹⁶⁰⁾.

나) 자본이득

투자법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자본이득은 주식의 상장 여부에 따라 달리 과세된다. 먼저, 투자법인의 주식이 상장주식일 경우,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자본이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10%(다만, 2009년 4월초부터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신고분리과세된다.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상장주식의 양도손실은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주식 등과 관련된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반면에 투자법인의 주식이 상장주식이 아닐 경우,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자본이득은 역시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지만,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신고분리과세된다.

158)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8호

159) 일본 소득세법 제9조의3 제2항

160)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8호

IV.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간접투자과 관련된 국제조세제도

1. 한국의 국제 간접투자세제

가. 역외펀드(Offshore Fund)의 의미

한국의 경우 역외펀드(Offshore Fund)에 대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며, 단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에서 외국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역외펀드(외국간접투자기구)는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유효하게 설립된 펀드(간접투자기구)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및투자법인에관한법률’에서 외국투자신탁과 외국투자법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외국투자신탁은 외국에 있어 외국의 법령에 근거해 설정된 신탁으로, 일본의 투자신탁과 비슷한 것이다. 둘째, 외국투자법인은 외국의 법령에 준거해 설립된 법인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투자증권 또는 투자법인채권과 비슷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실체이다.

이를 종합하면, 역외펀드(외국간접투자기구)는 외국의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한국의 간접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조세조약에서 과세상 주소에 대해서 달리 정함이 있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나. 간접투자기구의 세제

국내펀드는 한국의 간접투자기구로 한국의 간접투자세제에 따라 모든 국내원천소

득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반면에 역외펀드는 외국의 간접투자기구로 한국의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은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제도에 따라 과세하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투자신탁과 관련된 세제는 이를 실질적으로 도관으로 보아 간접투자기구 단계에서는 과세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과세소득의 종류와 과세소득금액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세제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투자회사와 관련된 세제는 간접투자기구의 실체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나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없도록 조정된다. 투자회사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배분될 소득의 종류와 배분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제는 투자신탁과 관련된 세제와 유사하다.

1) 국내펀드

가) 국외원천소득

□ 투자신탁형

투자신탁은 법적인 실체가 아니므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국내투자신탁의 국외원천소득이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한다.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세액공제(환급)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투자신탁을 법인으로 보아¹⁶¹⁾ 투자신탁단계에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인데, 투자신탁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국내원천징수 세율(14%)을 한도로 투자신탁이 환급받을 수 있다¹⁶²⁾. 따라서 환급받은 외국납부세액은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높이고¹⁶³⁾, 14%를 초과하여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낮추어 투자자에게 부담된다. 간접투자증권이 수시로 매입 또는 환매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방식은 투자자의 이중과세 조정의 부담을 완화시킨다¹⁶⁴⁾.

161)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

162)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2항

163)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4항

□ 투자회사형

투자회사는 상법상 법인이므로 법인세를 부담한다. 국내투자회사의 국외원천소득이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경우 지급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며,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서 원천징수한다. 또한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될 수 있으나 지급배당공제제도로 인해 투자회사가 부담할 법인세액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은 대부분의 경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¹⁶⁵⁾규정에 따라 환급된다.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하는 방식은 투자신탁의 방식과 동일하다.

나)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분배금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분배에 대한 원천징수는 아래 ‘다. 투자자의 세제’에서 설명한다.

2) 역외펀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역외펀드는 외국인으로서 과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역외펀드의 국내원천소득은 고정된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역외펀드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국내원천소득이나 그 국내사업장에 직접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종합하여 과세된다.

반면에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역외펀드의 국내원천소득이나 그 국내사업장에 직접 귀속되지 아니한 역외펀드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별로 원천분리과세된다¹⁶⁶⁾. 원천분리과세되는 소득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164) 예전에는 투자신탁에 귀속된 국외원천소득이 투자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이중과세를 조정하였다.(예규 법인46013-3184, 1999.8.13)

165) 법인세법 제57조의2

166) 소득세법 제121조

- 국내원천 이자소득과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에 대하여 14%로 원천징수한다¹⁶⁷⁾.
-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다만,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¹⁶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 및 특수관계 있는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은 그 지급금액의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양도차익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한다¹⁶⁹⁾.

다. 투자자의 세제

간접투자자 관련한 국제조세제도는 매우 복잡하다. 이는 투자자와 투자자산, 그리고 이를 연결시켜주는 간접투자기구가 국내에 있는지 혹은 해외에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상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내국인 투자자가 배분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검토한 후 외국인 투자자가 배분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검토한다. 또한, 각각의 경우 간접투자기구의 설립지에 따른 과세방법을 검토한다.

1) 내국인 투자자가 배분받은 국외원천소득

내국인 투자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한국의 세법에 따라서 과세되어야 한다. 즉, 그 소득은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또한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따라서 내국인 투자자가 배분받는 국외원천소득은 이중과세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167) 소득세법 제156조 1항 3호

168)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69) 소득세법 제156조 1항 4호

다. 외국납부세액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단계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투자신탁(또는 투자회사)의 경우 간접투자기구의 실체는 실질적으로 도관이라는 점과 간접투자증권이 수시로 매입 또는 환매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접투자기구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현행 제도가 더욱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¹⁷⁰⁾.

가) 해외투자펀드로부터 배분받은 국외원천소득

내국인이 해외투자펀드로부터 배분받은 국외원천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 투자펀드 세제에 따라 과세된다. 따라서 국외원천소득을 배분받더라도 이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또한,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내 투자펀드의 순자산이 증가될 경우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나 이 과세소득에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을 제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의 거래나 평가에 의한 소득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¹⁷¹⁾. 반면에 해외투자펀드가 해외의 증권거래시장에서 거래된 유가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세 중립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상장된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3년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도입할 예정에 있다.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특례¹⁷²⁾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 단계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은 발생한 시점에 환급액을 계산하여 기준가격에 반영된다. 환급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은 직접외국납부세액에 한정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해외투자펀드의 수익에 대한 분배금은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되며 국외원천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신탁(투자회사)은 불완전한 도관(Conduit)이라고 볼 수 있다.

170) 법인세법 제57조의2

171) 과세가격의 순증감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함.

172)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2항

나) 역외펀드로부터 배분받은 국외원천소득

내국인이 국외에서 설정된 투자신탁으로부터 받은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개인) 혹은 수입배당금(법인)으로 보아 과세된다¹⁷³⁾. 내국인이 국외에서 설립된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도 배당소득 혹은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과세된다¹⁷⁴⁾.

내국인이 국외에서 설정된 투자신탁의 중도환매로부터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¹⁷⁵⁾. 내국인이 국외에서 설립된 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중도환매로부터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나¹⁷⁶⁾ 그 투자회사의 펀드증권(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¹⁷⁷⁾.

역외펀드는 한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았으므로¹⁷⁸⁾, 소득금액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을 제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의 거래나 평가에 의한 소득을 제외할 수 없다¹⁷⁹⁾. 따라서 국내의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처분이익이나 평가이익이 발생하여도 국내펀드와는 달리 기준가격으로 과세된다¹⁸⁰⁾.

역외펀드의 경우 이익을 수령하는 날 또는 환매일이 수입시기이다. 다만, 재투자 특약이 있고 결산시점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본다.

외국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는 자¹⁸¹⁾가 있고 투자자가 거주자¹⁸²⁾인 경우에는 그 지급을 대리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한다. 외국투자신탁과 외국투자회사의 증권은 주로 외화로 표시

17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5호

174)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175) 중도환매차익도 신탁의 이익으로 봄.

176) 제도 46011-12687, 2001.8.16

177) 소득세법 제118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2 2항

178)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1호

179)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180) 국내펀드는 과세가격에 의해 과세됨.

181) 해외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기관이 이에 해당함.

182)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되는데 배당금과 중도환매대금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금액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며¹⁸³⁾, 지급 시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¹⁸⁴⁾.

2) 외국인 투자자가 배분받은 국내원천소득

외국인 투자자가 배분받은 국내원천소득은 한국의 세법에 따라서 과세된다. 다만, 외국인이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가의 내국인일 경우에는 그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한국자산에 직접 투자한 역외펀드의 과세제도

역외펀드의 국내원천소득은 고정된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역외펀드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국내원천소득이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종합하여 과세된다¹⁸⁵⁾.

반면에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국내원천소득은 소득별로 분리하여 원천징수한다¹⁸⁶⁾. 원천분리과세되는 소득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 국내원천 이자소득과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2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9조 1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에 대하여 14%로 원천징수한다¹⁸⁷⁾.

○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다만,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¹⁸⁸⁾함으로써 발생

183) 소득 46011-805, 1996.03.13

184) 법인 46013-2375, 1999.06.24

185)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186)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187)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3호,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188)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

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 및 특수관계 있는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은 그 지급금액의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양도차익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한다¹⁸⁹⁾.

□ 국내펀드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의 과세제도

외국인 투자자가 받은 국내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외국인 투자자가 받은 국내투자회사의 배당금도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받은 국내투자신탁의 분배금에 대한 과세소득은 총소득¹⁹⁰⁾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을 제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의 거래나 평가에 의한 소득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받은 국내투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과세소득에는 총소득에서 앞서 언급한 상장유가증권, 벤처회사의 주식 및 선물의 거래와 평가에 관한 소득이 제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자회사 배당금의 제외규정의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주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신탁의 경우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며, 투자회사의 경우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원천소득은 고정된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종합하여 과세된다.

반면에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국내원천소득은 소득별로 분리하여 원천징수된다¹⁹¹⁾. 따라서 국내펀드로부

우를 포함한다.

189)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4호,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4호

190) 기준가격의 증가

191) 소득세법 제121조

터 수취한 배당소득은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다만, 조세조약에 달리 정함이 있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 영국의 국제 간접투자세제

가. 역외펀드(Offshore Fund)의 의의¹⁹²⁾

(1) 영국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2) 영국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3) 영국의 자산에 투자되지 않은 펀드는 역외펀드(Offshore Fund)라 하더라도 영국의 세법을 따라야 한다. 다음은 역외펀드로 결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다.

첫째, 영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펀드는 영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 펀드(이하, '의제국내펀드')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관리와 통제가 수행되는 장소와 펀드가 설립된 장소가 영국이면 의제국내펀드가 된다.

둘째, 영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펀드가 지점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영국 국내에서 거래될 경우 그 지점이나 대리인에게 귀속될 소득(income)이나 이득(gain)은 국내펀드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위의 역외펀드에서 수행한 거래가 영국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모든 상황과 사실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셋째, 역외펀드가 영국의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된 소득은 원천별로 영국 세법에 따라 과세되거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에 따라 그 부담이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조세조약에서 과세상 주소에 대해 달리 정함이 있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92)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pp 835, IFA

나. 간접투자기구의 세제

1) 영국펀드¹⁹³⁾

가) 국내원천소득

영국펀드가 외국의 자산에 투자한다고 하여도 영국에서 거주하는 펀드로 분류될 경우 영국펀드로 분류되고 영국 세법상 국내펀드에 적용하는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¹⁹⁴⁾.

국내펀드가 외국의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FID), 이자소득 및 자본이득으로 구성된다. 해외배당소득(FID)은 승인단위신탁(AUT)이나 투자신탁회사(ITC)의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만, 배당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승인단위신탁(AUT)나 투자신탁회사(ITC)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승인단위신탁(AUT)이나 투자신탁회사(ITC)가 외국의 자산을 거래하여 발생한 자본이득(Capital Gain)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이는 비록 외국의 자산을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승인단위신탁(AUT)나 투자신탁회사(ITC)는 영국에 거주하는 펀드로서 영국의 세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펀드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 방법이나 손금산입 방법을 사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다만,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할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세액공제의 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

나)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분배금

외국인이 국내펀드에 투자하더라도 투자한 펀드가 영국 세법상 영국에 거주하는 펀드일 경우 영국펀드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영국펀드에 귀속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되나, 투자자산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법인으로 받은 배당소득은 면제투자소득(FII)으로 과

193) 영국에 거주하는 승인단위신탁(AUT)이나 투자신탁회사(ITC)를 의미한다. 이하 같음.

194) 한국의 분류에 따르면 해외투자펀드가 될 수 있다.

세에서 제외되며 이자소득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과세되지 않은 소득(UI)이므로 법인세 영국펀드의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 공제 방법이나 손금산입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그 공제된 세액의 한도는 조정될 수 있다.

영국펀드가 외국인에게 수동적 투자소득(Passive Investment Income)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20%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조정될 수 있다. 또한 영국펀드가 외국인에게 배분한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2) 역외펀드

역외펀드라 하더라도 국내펀드로 간주되면 국내펀드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언급한 ‘내국인이 투자한 역외펀드’는 국내펀드로 보지 않는 역외펀드를 의미하며, 소득법인세법(ICTA)상 비거주법인(non-resident company)에 해당한다.

다만, 역외펀드가 ‘통제된 외국회사’(Controlled Foreign Company, 이하 CFC)에 해당될 경우 역외펀드에 10% 이상의 지분을 갖는 투자자는 그 통제된 외국회사(CFC)가 소득을 배분하지 않더라도 발생된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적절한 배분정책을 가지고 있는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통제된 외국회사(CFC)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조세제도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역외펀드가 영국에 투자하여 수취한 소득(자본이득 제외)은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먼저 영국 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다음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요청에 의하여 그 차액을 환급받는 절차를 취한다¹⁹⁵⁾.

역외펀드가 국내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자본이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조세

195)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국세청의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과 영국 세법에 의한 세율 중 낮은 세율로 신고할 수 있다.

조약에 따라 과세된다. 따라서 영국에 대리인이나 지점을 통한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영국 거주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나 대리인이나 지점을 통하지 않은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비거주법인에게 발생한 자본이득으로 분류되어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다. 투자자

1) 내국인 투자자가 배분받은 국외원천소득

가) 해외에 투자한 영국펀드로부터 배분받은 소득

투자자가 영국펀드의 국외원천소득(자본이득 제외)으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영국펀드가 해외의 투자자산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본이득(자본손실 포함)은 투자자에게 배분되지 않으며, 따라서 과세되지도 않는다. 다만, 투자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나 자본손실이 누적되어 평가된 수익증권(또는 주식)을 환매하거나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CGT)를 부담하여야 한다¹⁹⁶⁾.

국외원천소득(자본이득 제외)과 관련한 외국납부세액은 영국펀드 단계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투자자는 영국펀드가 부담할 외국납부세액을 이전받지 않는다.

나) 역외펀드로부터 배분받는 국외원천소득

투자자가 역외펀드로부터 배분받은 소득(Income Gain으로 자본이득은 제외)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며,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국외원천소득이 대리인이나 지점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배분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나 지점이 원천징수를 하지만 대리인이나 지점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다. 투자자는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의 방법이나 손금산입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96) sec. 98(1)(b), Taxation of Capital Gains Act 1992

역외펀드¹⁹⁷⁾의 주식 등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은 Schedule D, Case VI에 따른 소득(Income)으로 보아 과세한다. 이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일반적으로 낮으므로 역외펀드의 경우 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려는 의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역외펀드로부터 배당을 받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투자자가 수취하는 경우 과세된다. 따라서 역외펀드로부터 발생한 해외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역외펀드에 유보할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제 외국회사’(Controlled Foreign Company, 이하 CFC)제도를 두고 있다. 역외펀드가 통제된 외국회사(CFC)에 해당될 경우 역외펀드에 10% 이상의 지분을 갖는 투자자는 그 통제된 외국회사(CFC)가 배분하지 않더라도 현지 발생소득의 재투자시 또는 펀드전환시 소득의 환수 여부에 불문하고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최소 순과세소득의 90%를 정기적으로 배분하는 정책을 가지는 펀드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외국인 투자자가 배분받은 국내원천소득

외국인이 영국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은 영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외국인에 대한 영국의 세법은 지점(trading branch)이나 대리인(Agency)의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먼저, 외국인의 지점(trading branch)이나 대리인(Agency)이 있는 경우, 동 지점이나 대리인의 거래와 관련이 있는 국내원천 소득(income)과 국내원천 자본이득(capital gain)은 영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하지만, 외국인의 지점(trading branch)이나 대리인(Agency)이 없는 경우, 동 지점이나 대리인의 거래와 관련이 있는 국내원천 소득(income)은 영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되지만, 국내원천 자본이득(capital gain)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영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그 외국인 투자자가 배분받은 국내원천소득은 우선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분되는 국내원천소득은 20% 세율이나 조세조약상의 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서 이중과세

197) 분배펀드(Distributing Fund)로 승인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를 방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3. 미국의 국제 간접투자세제

가. 역외펀드(Offshore Fund)의 의의

역외펀드(Offshore Fund)는 미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투자펀드(Investment Fund)¹⁹⁸⁾이다. 역사적으로 역외펀드(Offshore Fund)는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역외펀드(Offshore Fund)에서 발생된 소득이라도 그 소득이 국내의 사업과 효과적으로 관련이 있는(Effectively Connected)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반면에 역외펀드(Offshore Fund)에서 발생된 소득이 국내의 사업과 효과적으로 관련이 없는(Effectively Connected) 경우에는 ‘고정기간소득(Fixed or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Income, 이하 FDAPI)¹⁹⁹⁾’에 대해서 30%의 세율로 과세한다²⁰⁰⁾. 다만, 조세조약에 의해서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조세조약에서 과세상 주소에 대해 달리 정함이 있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나. 간접투자기구의 세제

간접투자기구는 세법상 분류 형태에 따라서 세제를 달리 적용한다.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세법상 분류는 크게 법인으로 분류되는 펀드의 경우와 파트너십으로 보는 펀드 및 위임신탁(Grantor Trust) 등으로 분류되는 펀드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트너십으로 보는 펀드의 경우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따라 간접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어떠한 과세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며 위임신탁(Grantor Trust)으로 분류

198) 투자펀드는 그 설립에 대한 법적인 형태에 따라 법인, 파트너십 등으로 분류된다.

199)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다른 소극적 투자소득(Passive Investment Income)을 포함하나, 자본이득은 제외된다.

200) IRC §881(a)

되는 펀드의 경우에는 파트너십으로 보는 펀드와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설명을 생략한다. 다음은 법인으로 보는 펀드의 국제조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1) 미국펀드

가) 국외원천소득

미국 내국인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원천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즉 해외 자산에 투자한 미국펀드는 해외자산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국내원천소득의 과세의무와 동일한 과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미국세액의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하다²⁰¹⁾.

다만, 적격투자회사(RIC)는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분류되므로 직접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그 적격투자회사(RIC)에서 투자한 자산의 50% 이상이 외국의 투자자산이고 과세소득(Taxable Income)의 90% 이상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적격투자회사(RIC)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주주가 주주의 세무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²⁰²⁾. 또한 외국회사 의결권의 10% 이상을 배당받는 미국회사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도 가능하다²⁰³⁾.

나)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분배금

외국인이 미국펀드에 투자하더라도 투자한 펀드가 미국에서 설립되었다면 미국펀드이므로 미국펀드와 관련된 세무상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펀드가 투자하여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미국의 세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과세의무를 부담한다. 미국펀드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분배금과 관련된 세제는 ‘다. 2) 외국인 투자자가 배분받은 국내원천소득’에서 살펴본다.

201) IRC §901(b)(1)

202) IRC §853(a)

203) IRC §78

2) 역외펀드

역외펀드(Offshore Fund)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제도는 그 소득이 미국 내에서의 거래나 사업²⁰⁴⁾과 효과적으로 관련(Effectively Connected)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첫째, 외국에서 법인으로 설립된 역외펀드(Offshore Fund)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미국 내에서의 거래나 사업과 효과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국내원천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 이하 ECI)²⁰⁵⁾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의 누진세율(최고 35%)을 적용하여 과세한다²⁰⁶⁾. 그리고 그 소득(ECI)을 미국으로부터 송금할 경우에는 30%의 지점이득세(Branch Profit Tax)를 추가로 부담한다²⁰⁷⁾. 역외펀드(Offshore Fund)가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의 사업과 효과적으로 관련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누진세율과 지점이득세(Branch Profit Tax)를 부담한다.

또한, 외국에서 파트너십으로 설립된 역외펀드(Offshore Fund)의 경우 그 파트너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적인 과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파트너십이 미국 내에서 수행한 거래나 사업과 효과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파트너에게 귀속될 소득도 미국 내에서 수행한 거래나 사업과 효과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본다²⁰⁸⁾.

둘째, 외국에서 법인으로 설립된 역외펀드(Offshore Fund)에 귀속될 소득이 미국 내에서 수행한 거래나 사업과 효과적으로 관련이 없는(Effectively Connected) 경우에는 ‘고정기간소득(Fixed or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Income, 이하 FDAPI)’²⁰⁹⁾에 대해서 30%의 세율로 과세한다²¹⁰⁾. 또한, 외국에서 파트너십으로 설

204) 거주자인 중개자나 대리인을 통해서 단순히 유가증권이나 재화를 거래하는 것은 제외된다. IRC §864(c)

205) 국내원천 이자소득, 국내원천 배당소득과 일부 자본이득 포함. IRC §864(c)(2), IRC §865(e)(2)

206) IRC §864(c)(1)~(3)

207) IRC §884

208) IRC §875

209) 일반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다른 수동투자소득(Passive Income)을 포함하나, 자본이

립된 역외펀드(Offshore Fund)의 소득이 미국 내에서 수행한 거래나 사업과 효과적으로 관련이 없는(Effectively Connected) 경우에는 고정기간소득(FDAPI)을 파트너에게 배분하고 30%의 세율로 과세한다.

다. 투자자

1) 미국인 투자자가 배분받은 국외원천소득

가) 해외에 투자한 미국펀드로부터 배분받는 소득

펀드가 외국자산에 투자하더라도 그 펀드는 미국에서 설립되었으므로 미국펀드로 보아 과세한다. 미국의 펀드는 적격투자회사, 법인 및 파트너십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미국 세법상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첫째, 펀드가 적격투자회사(RIC)로 분류될 경우 펀드를 도관(Conduit)으로 보아 앞서 미국의 과세제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자는 배당 등 일반소득과 자본이득을 분배받을 수 있다. 또한, 적격투자회사(RIC)에서 투자한 자산의 50% 이상이 외국의 투자자산이고 과세소득(Taxable Income)의 90% 이상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적격투자회사(RIC)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주주가 주주의 세무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²¹¹⁾.

둘째, 펀드가 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펀드를 실체로 보아 법인세 관련 과세제도가 적용되므로 미국펀드가 국외원천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배당으로 과세되며, 투자자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여지는 없다.

셋째, 펀드가 파트너십으로 분류될 경우 펀드는 파트너십 관련 과세제도가 적용되므로 파트너십이 배분되는 것과 무관하게 파트너는 파트너십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과 이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배분받아 파트너별 세무신고에 반영한다. 파트너십 지분을 처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실현된 지분금액과 세무가액(Adjusted Basis)

특은 제외된다.

210) IRC §881(a)

211) IRC §853(a)

의 차이를 이득(gain)으로 인식한다²¹²⁾.

나) 역외펀드로부터 배분받는 국외원천소득

□ 조세회피 방지 규정

미국인 투자자는 역사적으로 역외펀드로부터의 배분을 이연시키는 방법으로 과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개인지주회사(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이하 FPHC)²¹³⁾ 규정, 통제외국회사(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이하 CFC)²¹⁴⁾ 규정 및 소극적 외국투자회사(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이하 PFIC)²¹⁵⁾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은 위 규정의 개별적 내용이다.

외국개인지주회사(FPHC)로 분류되는 역외펀드에 투자한 미국인은 역외펀드의 배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도 배분되는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²¹⁶⁾. 의제된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²¹⁷⁾.

과세연도 중 30일 이상이 통제외국회사(CFC)로 분류되는 역외펀드에 투자한 미국인은 그 펀드의 배분되지 않은 Subpart F 소득을 투자자의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²¹⁸⁾.

소극적 외국투자회사(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이하 PFIC)로 분류되는 역외펀드에 투자한 미국인은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분금액의 125%를 초과하는 배당액과 수동적 외국투자회사(PFIC)의 주식의 처분이나 환매로 인한 이득을 통상소득

212) IRC §741, 742

213)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회사를 외국 개인지주회사라고 한다. IRC §551~552

- 과세연도 기간 중 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함.
- 과세연도 기간 중 전체소득의 60% 이상이 소극적 투자소득이어야 함.

214)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회사를 통제외국회사라고 한다. IRC §951~957

- 과세연도 기간 중 5명 이하의 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함.

215)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회사를 소극적 외국투자회사라고 한다. IRC §1291~1297

- 과세연도의 총소득 중 75% 이상이 소극적 소득으로 구성되어야 함.
- 과세연도의 자산 중 평균적으로 50% 이상이 소극적 투자소득을 창출하여야 한다.

216) IRC §551

217) Rev. Rul. 71-59, 1974-1 C.B. 183

218) IRC §952

(Ordinary Income)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다만, 투자자가 적격선택펀드(Qualifying Electing Fund)를 선택할 경우 소극적 외국투자회사(PFIC)의 소득의 성격에 따라 통상이익(Ordinary Earning)이나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과세된다.

□ 투자자에 대한 과세제도

첫째, 외국개인지주회사(FPHC)나 통제외국회사(CFC)로 분류되는 법인형태의 역외펀드 중에서 적격선택펀드(Qualifying Electing Fund)를 선택하지 않는 역외펀드에 투자한 미국인 투자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을 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 있다. 반면에 이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형태의 역외펀드는 적격투자회사(RIC)나 법인으로 분류되어 배당과 관련한 미국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둘째,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분류되는 역외펀드에 투자한 미국인 투자자는 역외펀드에 귀속될 국외원천 소득, 필요경비, 공제, 손실 등에 대하여 배분받고 파트너십 지분이 처분되거나 환매되는 경우에는 실현된 지분금액과 세무가액(Adjusted Basis)의 차이를 이득(gain)으로 인식한다.

셋째, 위임신탁(Grantor Trust)으로 분류되는 역외펀드에 투자한 미국인 투자자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앞의 파트너십으로 분류된 역외펀드의 투자자와 동일한 세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2) 외국인(Non-Resident Alien) 투자자가 배분받은 국내원천소득

□ 미국 적격투자회사(RIC)로 분류되는 미국펀드

적격투자회사(RIC)의 소득이 미국에서의 거래와 효과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적격투자회사(RIC)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가 배분받은 소득 중 장기자본이득을 제외한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30%의 세율(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로 원천징수된다²¹⁹⁾. 다만, 장기자본이득을 원천으로 하는 배분금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²²⁰⁾. 따라서 적격투자회사(RIC)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219) IRC §871(a), (b)

는 직접투자자나 미국의 자산에 투자한 역외펀드 투자자보다 세무상 불리하다. 또한, 투자한 자산의 50% 이상이 외국의 투자자산이고 과세소득(Taxable Income)의 90% 이상을 배분하는 적격투자회사(RIC)는 적격투자회사(RIC)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주주가 주주의 세무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²²¹⁾.

외국인이 보유한 적격투자회사(RIC) 지분의 처분이나 환매로 인한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않는다²²²⁾. 다만, 처분된 지분이 미국자산의 처분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적격투자회사(RIC)의 소득이 미국에서의 거래와 효과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는 미국의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된다.

□ 미국 파트너십이나 미국 신탁으로 분류되는 미국펀드

미국의 국내원천소득을 배분받은 파트너의 소득이 미국에서의 거래와 효과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자산으로 보는 지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또한 위의 파트너가 해당 펀드의 지분을 처분하여 발생한 자본이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 국내원천소득을 배분받는 파트너(또는 신탁자)의 소득은 그 소득이 미국에서의 거래나 사업에 효과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미국 파트너십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 미국법인으로 분류되는 미국펀드(RIC 제외)

법인으로 분류되는 미국펀드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미국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에서의 거래와 효과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과세방법이 적용된다. 첫째, 미국에서의 거래와 효과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미국펀드에 투자한 외국인은 미국의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된다²²³⁾.

둘째, 미국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에서의 거래와 효과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

220) Rev. Rul. 69-244, 1969-1 C.B. 215

221) IRC §853(a)

222) IRC §871(a)(2)

223) IRC §871(b), IRC §882(a)

우,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30%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²²⁴⁾. 또한, 미국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에서의 거래와 효과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투자자 지분의 처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4. 일본의 국제 간접투자세제

가. 역외펀드(Offshore Fund)의 의의

역외펀드(Offshore Fund)는 그 설립형태에 따라 신탁형과 법인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외국투자신탁은 외국에 있어 외국의 법령에 근거해 설정된 신탁으로, 일본의 투자신탁과 비슷한 것이다²²⁵⁾. 또한, 외국투자법인은 외국의 법령에 준거해 설립된 법인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투자증권 또는 투자법인 채권과 비슷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실체이다²²⁶⁾. 다만, 조세조약에서 과세상 주소에 대해 달리 정함이 있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나. 간접투자기구의 세제

역외펀드가 일본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투자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형태의 역외펀드의 경우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에 대한 과세제도를 적용하며, 신탁형태의 경우 도관으로 보아 신탁의 과세제도를 적용한다.

224) IRC §871(a)

225) 일본 ‘투자신탁및투자법인에관한법률’ 제2조 28항, 일본 ‘소득세법’ 제2조 12의2항

226) 일본 ‘투자신탁및투자법인에관한법률’ 제2조 29항

1) 일본펀드

가) 국외원천소득

투자신탁(특정투자신탁 제외)

투자신탁(특정투자신탁 제외)은 외국의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특정투자신탁

특정투자신탁은 국내와 해외의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부과된 기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투자법인

국내와 해외의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된 세액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제된다.

나)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분배금

주식투자신탁, 특정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이 외국인에게 배분하는 주식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배분시점에 10%(2008년 3월말까지 10%이며 이후에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함이 있으면 조세조약에 따라야 한다. 일본이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르면 배당소득의 세율은 대부분 15%이다.

공사채투자신탁이 외국인에게 배분하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배분시점에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함이 있으면 조세조약에 따라야 한다. 일본이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르면 이자소득의 세율은 대부분 10%이다.

2) 역외펀드(일본국내자산투자로 인한 소득)

외국투자신탁과 외국투자법인이 일본국내자산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10%(2008년 3월말까지 10%이며 이후에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일본국내자산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외국투자신탁과 외국투자법인이 일본국내자산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본이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다. 투자자의 세제

1) 일본인 투자자가 배분받은 국외원천소득

가) 일본펀드로부터 배분받은 국외원천소득

투자신탁(특정투자신탁 포함)수익의 분배금 중에 외국의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투자법인의 소득 중 외국의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은 투자법인 단계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투자자는 공제받지 못한다.

나) 역외펀드로부터 배분받는 소득

□ 역외펀드의 배분소득

원천징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역외펀드로부터 배분받는 소득은 국내투자신탁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된다. 즉, 외국주식투자신탁으로부터 받은 수익의 분배금과 외국투자법인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0%(2008년 3월말까지 10%이며 이후에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배당세액공제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외국공사채투자신탁으로부터 받은 수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주식투자신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세

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천징수 대리인이 없는 경우 역외펀드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될 수 있으나 배당세액공제는 적용될 수 없다.

□ 역외펀드 수익증권(주식)의 자본이득

원천징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역외펀드의 수익증권(주식)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은 투자신탁(투자회사)의 수익증권(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에 따라야 한다. 즉, 외국공사채투자신탁 수익권의 해약이나 매입청구로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외국주식투자신탁 수익증권(주식)의 해약의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매입청구(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은 과세된다.

원천징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역외펀드의 수익증권(주식)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 역외펀드가 통제외국법인(CFC)인 경우

외국투자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제외국법인(CFC)로 분류되어 투자법인이 배분하지 않고 투자법인 내에 유보한 소득에 대해서는 배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 일본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발행주식²²⁷⁾의 50% 이상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 특정 투자자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2) 외국인 투자자가 배분받은 국내원천소득

□ 일본에 직접 투자한 역외펀드

외국의 투자신탁이나 외국의 투자법인에 ①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본법인은 일본 법

227) 법인세율이 25% 이하가 적용되는 법인의 발행주식

인세법에 따라 20%의 세율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② 이자를 지급하는 일본 법인은 일본 법인세법에 따라 15%의 세율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의 투자신탁이나 외국의 투자법인이 투자한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만약,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함이 있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일본펀드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일본의 비거주자가 배분받은 주식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0%(2008년 3월말까지 10%이며 이후에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함이 있으면 조세조약에 따라야 한다. 일본이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르면 배당소득의 세율은 대부분 15%이다.

일본의 비거주자가 배분받은 공사채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함이 있으면 조세조약에 따라야 한다. 일본이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르면 배당소득의 세율은 대부분 10%이다.

V. 간접투자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주요국의 입법례

간접투자의 경우 투자자는 그의 재산을 간접투자기구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여 투자로 인하여 간접투자기구가 취득한 투자의 성과를 배분받게 된다. 따라서 직접투자와 달리, 간접투자에서는 간접투자기구가 투자재산과 투자자를 연결한다. 결국 과세제도 측면에서 간접투자와 직접투자 간의 차이점은 간접투자기구의 과세제도에서 비롯된다.

결국 간접투자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문제점이다. 즉, 첫째, 직접적으로 투자할 경우에 비하여 세부담 측면에서 과세상 형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둘째, 간접투자기구가 도관에 불과한 경우에도 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셋째, 투자자가 간접투자기구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수입시기 결정될 수도 있다.

앞의 과세상 형평성을 설명하면, 직접투자의 경우와 달리 간접투자의 경우 과세소득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간접투자의 투자손실이 발생하여도 과세될 수 있고, 투자자 단계에서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간접투자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에 대해 기술한다.

1. 직접투자와의 조세형평성에 관련된 문제점

가. 일부 소득 비과세

1) 문제점

투자자의 과세소득은 투자신탁(투자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²²⁸⁾을 먼저 집계한

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일부 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하지만,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와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가 직접투자에서 과세되거나 과세되지 않는 소득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직접투자한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간접투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직접투자한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간접투자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직접투자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간접투자의 소득에 포함되는 예는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이다. 이를 자세히 설명한다. 대주주인 투자자가 직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²²⁹⁾. 반면에,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의 이익 및 분배금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투자자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²³⁰⁾. 따라서, 대주주가 직접 투자할 경우 과세되어야 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은 투자신탁에 편입된 후 양도될 경우,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직접투자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포함되는 소득이 간접투자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예는 채권이나 파생상품의 양도차익 등이다. 투자자가 직접 취득한 채권이나 파생상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²³¹⁾. 반면에,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의 이익 및 분배금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채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 중 대통령이 정한 것의 거래나 평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²³²⁾. 따라서 직접 투자할 경우 과세되지 않는 채권의 양도소득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후 양도될 경우, 결과적으로 채권의 양도소득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의 이익 및 분배금에는 파생상품²³³⁾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소

228) 신탁재산에 발생한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양도차익 등이 모두 포함된다.

229) 所得稅法 제94조

230) 所得稅法施行令 제23조

231) 所得稅法 제94조

232) 所得稅法 제46조

득도 역시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²³⁴⁾. 따라서 직접 투자할 경우 과세되지 않는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후 양도될 경우, 결과적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주요국의 입법례

가) 영국

영국의 경우 승인형 투자신탁(AUT 또는 ITC 등)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간접투자기구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배분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배분되지 않는 자본이득은 수익증권(주식)의 가치에 반영되어 투자자가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전액 투자자의 자본이득세로 과세된다. 이를 자세히 설명한다.

승인형 투자신탁(AUT 또는 ITC 등)의 과세소득(Income)에는 자본이득(Capital Gain)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과세소득(Income)은 국내원천 배당소득, 국외원천 배당소득(FID) 및 이자소득으로 구성되며, 투자자의 과세소득은 승인형 투자신탁(AUT 또는 ITC 등)의 과세소득에서 자본이득과 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반면,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한 자본이득(Capital Gain)은 주식, 채권 등 신탁재산²³⁵⁾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양도차익)²³⁶⁾으로 구성되며 간접투자자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한 자본이득(Capital Gain)은 자본이득세법(TCGA)상 자본이득의 범위와 일치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자본자산의 처분이익이 포함된다. 따라서 대주주의 상장주식과 벤처회사의 주식 및 채권 등에서 발생한 자본이득도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한 자본이득(Capital Gain)에 포함된다.

자본이득은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배당등으로 배분되지 않고 투자신탁에 그대로 누적되어 수익증권(Unit 또는 Share)의 가

233) 상장 또는 협회등록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은 제외한다.

234) 所得稅法 제46조

235) 신탁재산에는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파생금융상품도 포함된다.

236) 주식, 채권 등의 평가차익은 제외된다.

치를 증가시킨다. 수익증권의 가치에 반영된 자본이득은 결국 수익증권을 처분하는 시점에 수익증권의 자본이득으로 반영되어 자본이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 후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의 조세부담과 투자신탁에 투자 후 수익증권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부담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신탁을 이용할 경우 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의 실현은 수익증권의 처분 시까지 이연할 수 있다.

결국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의 자본이득은 승인형 투자신탁(AUT 또는 ITC 등)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수익증권의 가치에 포함되어 수익증권의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부담하게 한다. 또한, 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도 역시 수익권의 가치에 포함되어 수익권의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부담하게 한다.

나) 미국

도관으로 보는 간접투자기구인 적격투자회사(RIC)와 파트너십(Partnership)에 귀속된 소득은 그 종류별로 구분되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직접투자할 경우에 부담할 과세소득과 간접투자할 경우에 부담할 과세소득 간의 차이가 없다. 다만, 실체성이 인정되는 간접투자기구(예를 들면, 법인으로 보는 간접투자기구로 적격투자회사(RIC)가 아닌 뮤추얼펀드 등이 있다)는 투자자가 그 간접투자기구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므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원천과 상관없이 배당의 형태로 배분된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도관으로 보는 적격투자회사(RIC)나 파트너십(Partnership)이 투자한 주식(또는 지분)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에게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배분되어 과세된다. 또한,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도 별도로 구분²³⁷⁾하여 투자자에게 통상소득이나 자본소득으로 배분되어 과세된다. 결국 간접투자기구를 도관으로 보는 경우는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 간의 소득종류와 소득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지

237) 미국의 파생상품은 명목원금을 받는 상품인 경우 통상소득, 선물인 경우 자본소득, 선도거래인 경우 자본소득, 시가평가옵션도 선물과 같이 취급하여 자본소득, 주식옵션도 자본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않는다.

다) 일본

투자신탁으로 인해 배분받은 분배금의 과세소득은 기준가액의 증감에 따라 결정되고²³⁸⁾ 기준가액은 간접투자기구의 순자산가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부소득이 과세소득의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가 간접투자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에는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과 투자자산의 거래로 인한 자본이득 및 투자자산의 시가평가로 인한 평가손익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직접투자의 경우 자산의 거래로 인한 자본이득의 경우 그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투자자산 중 주식의 거래로 인한 자본이득은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므로 투자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며, 파생상품과 관련한 자본이득은 일본의 ‘투자신탁및투자회사에관한법률’에 따라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자본이득이 발생할 수 없다. 다만, 채권의 경우 직접투자할 경우 채권별로 과세방법이 다르므로 직접투자의 경우와 과세소득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투자손실 시에도 납부세액 발생 가능, 결손금이 이월되지 않음

1) 문제점

투자회사 투자자의 과세소득은 대차대조표 접근방법에 따라 환매(또는 결산)시점의 [과세가격²³⁹⁾ × 출자(환매)주식수]에서 발행(또는 최종결산기준일)시점의 [과세가액(또는 최종결산기준일 이후의 최초과세가액) × 출자(환매)주식수]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산된다²⁴⁰⁾. 결국 투자자의 과세소득은 투자회사의 과세대상 순자산이 증가될

238) 개별원본에 따라 과세소득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음.

239) 이것을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음.

$$\text{과세가액} = (\text{순자산} - \text{비과세손익}) / \text{주식발행총수(총좌수)} \times 1,000$$

240)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6항

경우 발생하며, 과세대상 순자산이 감소할 경우 투자자의 과세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전기에 과세대상 순자산이 감소하여 투자자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전기말 과세대상 순자산보다 환매(또는 결산)시점의 과세대상 순자산이 증가하기만 하면, 투자자의 과세소득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과세소득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또는 최종결산기준일)시점의 과세가격이 최종결산기준일 기준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매시 과세가격이 투자원본금액을 하회하여 순투자손실이 발생하여도 환매시 과세가격이 전기말 과세가격을 상회하면 과세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전기에 발생한 투자손실이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주요국의 입법례

가) 영국

영국의 경우 자본손실은 배분되지 않고 수익증권(주식)의 가치에 누적적으로 반영되어 투자자가 부담할 자본이득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자본손실이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자세히 설명한다.

승인형 투자신탁(AUT 또는 ITC 등)의 과세소득은 국내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및 이자소득과 같은 소득(Income) 및 투자재산의 처분으로 인해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소득(Income)은 언제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성격인 데 반해 투자재산의 처분은 순자산을 증가시킬 수도 감소시킬 수도 있다. 투자재산의 처분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손실이라고 하며 순자산은 감소하고, 투자재산의 처분시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이득이라고 하며 순자산은 증가한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순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는 오직 투자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승인형 투자신탁(AUT 또는 ITC 등)은 자본이득을 투자자에게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신탁에 누적되어 순자산을 증가시킨다. 부의 자본이득인 자본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의 순자산에 반영되어 누적된 자본이득을 감소시키게 되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의 순자산은 감소하게 된다. 결국 순자산에 누적된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은 수익증권(또는 주식)의 처분 시점에 수익증권(또는 주식) 가치에 반영이 되어

자본이득을 각각 증가,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즉 투자신탁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자본손실은 보유기간 중 누적되어 투자자가 수익증권(또는 주식)을 처분할 시점에 수익증권(또는 주식) 가치에 모두 반영되어 자본이득세가 과세된다.

나) 미국

도관으로 보는 적격투자회사(RIC)와 파트너십(Partnership)의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손실은 투자자에게 배분되어 투자자의 자본이득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손실이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자세히 설명한다.

도관으로 보는 적격투자회사(RIC)와 파트너십(Partnership)의 투자자는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투자자산에 관한 자본이득²⁴¹⁾을 배분받는다. 만약 투자자산의 매매가액이 투자자산의 세무가액(Basis)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자본이득으로 구분하여 저율과세하게 되고, 반대로 투자자산의 매매가액이 투자자산의 세무가액(Basis)에 미달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면 자본이익에서 손실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손실금액이 자본이익보다 더 크다면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 일본

일본의 경우 개별원본의 기록을 유지하여 기준가액이 개별원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므로 자본손실로 인해 투자신탁의 기준가액이 개별원본에 미달할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자세히 설명한다.

투자신탁의 결손을 유발하는 자본손실은 투자신탁의 순자산금액에 반영되어 수익증권의 기준가액을 하락시키고 기준가액의 증감으로 결정되는 과세소득을 하락시킨다. 만약 결손을 유발하는 자본손실로 인해 하락된 기준가액이 개별원본에 미달할 경우, 이는 원본을 손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손실이 과세소득 계산에 반영되며, 이로 인해 개별원본에 기준가액이 미달할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241) 자본이득은 투자자산의 매매가액에서 투자자산의 세무가액(Basis)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이 때 세무가액(Basis)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손익을 반영하여 산정된다.

다. 간접투자로 얻는 배당소득의 경제적 이중과세

1) 문제점

간접투자란 투자자가 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재산을 보유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제도이다. 따라서 간접투자로 인한 과세소득은 각각 투자재산 단계, 간접투자기구 단계 및 투자자 단계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배당소득의 경우 이미 투자재산 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으로 이를 간접투자기구 단계나 투자자 단계에서 과세한다면, 이중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다.

한국의 경우 투자재산 단계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투자회사의 법인세가 과세된 후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과세된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당소득이 간접투자기구에 분배되고 간접투자기구의 순자산은 증가한다. 간접투자기구가 투자신탁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 과세의무자가 아니므로 투자신탁 단계에서 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간접투자기구가 투자회사의 경우 상법상 법인으로 법인세법상 과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와 지급배당공제제도로 인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제거된다. 즉, 한국의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 형태의 간접투자기구는 실질상 도관(Pass-through)로 보아 납부할 세액의 부담이 제거된다.

다만, 간접투자기구의 투자성과를 배분받은 투자자는 간접투자기구가 투자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세후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을 간접투자기구로부터 배분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않는다.

즉, 법인투자자의 경우 투자신탁으로부터 배분받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법인투자자 과세소득에서 익금에 산입되나, 투자신탁은 내국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만 익금불산입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²⁴²⁾. 또한 투자회사로부터 배분받은 배당금은 법인투자자 과세소득에서 익금에 산입되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그 금액을 투자회사 등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242)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하는 경우에는 법인투자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²⁴³⁾.

한편,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신탁으로부터 배분받은 분배금은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포함되거나 배당소득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²⁴⁴⁾ Gross-up되지도 않고 배당소득 세액을 공제할 수도 없다. 또한 투자회사로부터 배분받은 배당금은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지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그 금액을 투자회사 등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자는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²⁴⁵⁾.

결국, 한국의 경우 투자자 단계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2) 주요국의 입법례

가) 영국

영국의 경우 투자자 단계에서 이중과세가 조정된다. 다만, 법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먼저, 법인투자자가 내국법인의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배분받은 배당금은 이미 내국법인 단계에서 과세되었으므로 투자회사 단계에서는 추가적으로 법인세²⁴⁶⁾가 과세되어서는 아니 되는 소득이다. 즉, 내국법인의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배분받은 배당금은 면제투자소득(FII)으로 투자회사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²⁴⁷⁾.

다음으로 개인투자자나 법인투자자가 내국법인의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배분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Schedule F)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²⁴⁸⁾. 내국법인으로

243)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1항 2호,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2호

244)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245) 소득세법 제17조의 제1항 1호, 소득세법 제17조의 제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1호,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2호,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246) ss. 208, 238(1),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247) 과세된 투자소득(Franked Investment Income)은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법인세 해당액을 세액공제의 형태를 차감함. 따라서 실질적으로 법인세는 면제된다.

248) sec. 20(1)1,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부터 거주자에게 적절한 분배금(Qualifying Distribution)²⁴⁹⁾을 지급하는 경우 동 분배금은 지급한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배당의 재원으로 한 것이므로 투자자 단계에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투자자의 경우 임퓨테이션(Imputation) 방식에 의해서 배당금의 10%를 배당소득 수입금액 계산 시 가산한 후 세액공제에 포함시킨다.

결국, 영국의 세법에서는 배분받은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① 법인투자자의 경우 면제투자소득(FII)로 분류되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며, ② 개인투자자의 경우 임퓨테이션(Imputation) 방식에 의한 배당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나) 미국

직접투자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되지만 법인투자자가 배분받은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제도로 인하여 이중과세가 조정된다.

간접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소득은 간접투자기구의 종류에 따라서 이중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먼저 법인으로 보는 간접투자기구의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투자자산 단계에서 투자회사의 법인세가 과세되고 간접투자기구 단계에서 간접투자기구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익금불산입 금액만큼 제외되며 투자자 단계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다음으로 도관으로 보는 간접투자기구인 적격투자회사(RIC)와 파트너십(Partnership)의 경우, 투자자가 배분받는 배당소득은 간접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수입배당금소득공제제도(Dividends Received Deduction)²⁵⁰⁾ 및 지급배당공제

249) 다음의 2가지 배분을 제외한 모든 분배는 적절한 분배(Qualifying Distribution)임. sec. 14(2),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a) 보상 상환주식(Bonus Redeemable Share), 보상 증권(Bonus Securities)의 발행으로 배분하는 경우.

(b) 다른 회사로부터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보상 상환주식(Bonus Redeemable Share), 보상 증권(Bonus Securities)을 배분받은 회사가 주식이나 증권으로 배분하는 경우.

250) IRC §243(d), 우리나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에 의하면 적격투자회사(Regulated Investment Company)로부터 받는 배당도 수입배당금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도²⁵¹)나 파트너십과세제도로 인하여 간접투자기구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투자자산 단계에서는 투자회사의 법인세로 과세되며, 투자단계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결국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와 그 회사의 개인 주주 간의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소득세법이 도입하고 있는 배당세액공제제도에 갈음하는 제도가 미국 내국세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격투자회사(RIC)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와 그 적격투자회사(RIC)의 개인투자자 간에 존재하는 경제적 이중과세는 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적격투자회사의 개인 투자자에게만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회사의 개인 주주에게 발생하는 문제이다²⁵²).

다) 일본

일본의 경우 일본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특정신탁, 동조 동항 제4호에서 증권투자신탁을 익금불산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소득세법 제92조 제1항에 증권투자신탁 및 특정신탁을 포함한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는 간접투자자인 법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 대해서 경제적 이중과세를 배제하고 이를 조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법인투자자에게는 특정신탁 및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이중으로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조정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 역시 특정신탁 및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있다.

251) 적격투자회사가 적극적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도 수입배당금 소득공제대상이다.

252) 한만수 외(2005)

2.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에 관련된 문제점

가. 원천징수 의무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

1) 문제점

일반적으로 간접투자기구는 명목상 회사로 이를 법인으로 보건 도관으로 보건 간접투자기구의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신탁업법」 및 「간접자산투자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간접투자기구의 원천징수의무는 없다²⁵³⁾.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의 당해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²⁵⁴⁾. 하지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할 경우 그 배당금액을 간접투자기구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므로 대부분의 간접투자기구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는 간접투자기구가 명목상 회사인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거나 환급되어야 하는데, 투자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전액을 즉시 환급받는다²⁵⁵⁾. 결국 전액 환급받을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국세청에게는 투자신탁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징수와 환급업무를 담당할 추가적인 인원과 자원이 투입되어,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환급금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세청은 환급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253) 法人稅法施行令 제111조

254) 法人稅法 제73조, 法人稅法施行令 제112조, 所得稅法 제46조, 제16조

255) 國稅基本法 제51조

2) 주요국의 입법례

가) 영국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 등은 그 개인이 거주자이며, 이자가 비과세대상이 아닐 경우 초기세율(Starting Rate)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²⁵⁶⁾. 따라서 금융기관 등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한편, 승인형 투자신탁(AUT 및 ITC 등)은 소득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분류되므로 승인형 투자신탁(AUT 및 ITC 등)에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 등은 당연히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나) 미국

미국에서는 종합과세 및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세원의 조기 확보를 목적으로 원천징수, 분기추정납세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완납적 원천징수 즉 분리과세제도는 없으며 원천징수세액이나 추정납세액은 종합소득신고서상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고 있다. 즉, 미국의 세무구조상 납세자에게 관계없이 원천징수가 없는 것이다²⁵⁷⁾.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다) 일본

일본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공사채투자신탁과 주식투자신탁을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공사채투자신탁은 이자소득으로 보고 20%의 원천분리과세로 과세가 종료된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하여 금융기관에 대해서 특정한 요건²⁵⁸⁾을 갖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특례를 가지고 있다²⁵⁹⁾.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간접투자기구에 대해

256)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p. 65

257) 다만, 조세회피 방지 목적인 원천징수제도(backup Withholding)가 있음.

258) 국내에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 증권업자 등이 자본출자금액이 1억엔 이상인 내국법인으로서 이자 등을 받은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259) 조특법 제8조 제1항, 조특령 제3의 3조 제1항, 조특법 제8조 제2항, 조특법 제8조 제3항, 조특령 제3의 3조 제8항.

서 원천징수에 관한 문제점이 일본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나. 원본전입 특약의 경우 미확정된 조세채무를 확정된 조세채무로 인식

1) 문제점

투자신탁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이다.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²⁶⁰⁾. 특히 투자신탁 원본전입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을 수입할 시기로 보며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는 원천징수의 무가 발생한다. 원본전입이 되는 소득이 원본전입일 현재 투자자에게 확정된 소득이라면 원본전입일에 소득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자산의 운영실적에 따라 원본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이 가능하므로 원본에 전입된 수익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투자신탁의 경우 원본금액과 원본전입 금액의 투자로 인한 소득금액은 해약일 또는 환매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본전입일에 원본전입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전입할 경우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과세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2) 주요국의 입법례

가) 영국

이자나 배당을 원천소득으로 하는 소득을 간접투자기구 단계에서 재투자되는 경우에는 투자자 단계에서는 투자자에게 분배금액 만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이를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이는 이자와 배당을 확정된 소득으로 보아 먼저 배분한 후 재투자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원천소득이 이자와

260) 所得稅法施行令 제46조

배당인 경우 원본전입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이것은 이자와 배당의 수입이 원본전입 시점에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국 세법상 원본전입 특약이 있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한국의 그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나) 미국

펀드수익금액을 실제로 분배하지 않고 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수익금액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일반배당의 재투자자와 자본이익 분배금은 각각 소득으로 신고하게 된다. 면세채권이자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재투자할 때는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본분배금의 재투자는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다.

다) 일본

일본의 경우에도 이자나 배당을 원천소득으로 하는 소득을 간접투자기구단계에서 재투자되는 경우에는 투자자 단계에서는 투자자에게 재투자된 금액만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이를 투자자에게 배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내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Ⅵ. 시사점

1. 투자자가 배분받은 소득의 구분

간접투자자의 경우 투자재산 단계, 간접투자기구 단계, 간접투자자 단계의 세 단계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간접투자기구를 실체로 인정할 경우 간접투자기구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경제적 실질이 일종의 명목상 회사이므로 간접투자기구의 조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 반면에, 간접투자기구를 실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관으로 볼 경우 간접투자기구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간접투자기구가 법인으로 그 실체가 인정될 경우 간접투자기구의 소득은 그 발생원천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간접투자기구가 배분하는 소득은 원천별로 구분하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투자자에게 과세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간접투자기구가 도관일 경우 간접투자기구의 소득은 그 발생원천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간접투자기구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간접투자기구의 소득을 그 원천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 필요성은 간접투자기구의 실체 인정 여부와 관련 있다. 이에 대해서는 ‘3.도관 또는 실체에 대한 구분’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간접투자기구의 소득에 대한 발생원천별 구분의 필요성을 다음에서 소개한다.

가. 불완전 도관 및 이중과세 조정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배분받은 소득을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할 경우, 국내원천배당소득, 국내원천이자소득, 국외원천소득 및 자본이득으로 분

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간접투자기구가 투자한 주식의 발행회사(피투자회사)가 간접투자기구에 배분한 국내원천배당소득은 그 발행회사(피투자회사)의 법인세 과세 후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득이다. 만약,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 배분시점에 투자자에게 과세할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투자자 단계에서 이중과세 방지제도²⁶¹⁾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가 받은 소득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즉, 소득의 발생원천과 관계없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결국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는 완전한 도관이 아니라 불완전한 도관이다. 따라서 국내원천이자소득, 국외원천소득 및 자본이득은 소득의 성격이 변하여 과세되며,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이중과세 방지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이중과세된다.

미국의 경우 적격투자회사(RIC)로 분류된 간접투자기구는 완전한 도관으로 보아 간접투자기구 소득의 종류와 금액과 투자자가 간접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의 종류와 금액이 거의 유사하다. 영국의 경우는 간접투자기구에서 분배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원천배당소득은 별도로 구분하여 배당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자본이득은 배당되지 않고 수익증권(주식)의 가치에 반영되어 자본이득세로 과세되므로 직접투자의 경우와 소득의 종류가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이중과세 방지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나. 직접투자와의 형평성

우리나라의 간접투자제도는 투자자 보호와 정부의 감독이 비교적 수월한 투자신탁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도관으로 보아 관련된 세무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투자신탁 중심의 간접투자제에서는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에 차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261) 개인의 경우 배당세액공제, 법인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하지만, 간접투자기구에 투자소득이 집계되고 배분되는 과정에서 과세소득 계산방법 등이 직접투자와는 완전히 일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의 조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투자세제와 직접투자세제 간의 형평성 문제는 과세되는 자본이득의 범위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에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직접투자의 경우 과세되는 자본이득과 간접투자의 경우 과세되는 자본이득의 범위가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를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더구나, 최근 금융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의 결과, 여러 개의 금융거래가 묶여 하나의 금융거래를 형성하는 등, 금융거래의 복잡성이 커지고 있어 자본이득을 하나로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영국의 경우, 자본이득에 관련하여서는 자본이득세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승인형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배분되지 않고 수익증권(주식)의 가치에 반영되어 궁극적으로는 자본이득세가 과세된다. 즉,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과세되어 직접투자와 과세상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자본이득은 영국의 과세제도와는 달리 간접투자자에게 배분할 수도 있고 적격투자회사(RIC)에 유보시킬 수도 있으나, 간접투자기구 단계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과 원천적으로 분류하여 자본이득세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과세한다. 따라서 간접투자기구를 통하였다 하더라도 간접투자자 단계에서 직접투자의 조세효과와 간접투자의 조세효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직접투자와의 자본이득상 형평성 문제는 자본이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한 통일적인 과세규정을 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유가증권이나 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에 관한 소득을 복합적으로 규정하는 규정을 두고 이에 맞추어 간접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의 과세범위도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투자손실을 반영한 과세소득 인정

자본이득은 원칙적으로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 인식되어야 하며, 과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본이득의 과세원칙은 간접투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수익증권(주식)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환매금액이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환매금액의 투자원금 초과분이 자본이득의 과세소득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수익증권(주식)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투자자의 취득 당시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만약 간접투자기구에 자본손실이 발생하여 과세가격이 투자원금보다 하락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원본이 회복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익증권(주식)의 증가된 가액 중 원본회복분은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V.1. 나. 투자손실 시에도 납부세액 발생가능, 결손금이 이월되지 않음.'에서 살펴보았듯이 투자회사의 분배금에 대한 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기준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자본손실이 발생하여 과세가격이 원본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환매시점의 과세가격이 최종결산일의 과세가격보다 높기만 한다면 그 환매와 관련하여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주식)의 개별원본(Basis)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환매시점의 기준가격이 개별원본(Basis)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자본손실이 자본이득이나 다른 금융소득을 초과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매와 관련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에는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이 분배되지 않고, 간접투자기구(승인형)에 유보된다. 유보된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은 수익증권(주식)의 가치에 반영되어 환매시점의 자본이득세 계산에 반영된다. 따라서 자본손실이 자본이득이나 다른 금융소득을 초과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매와 관련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에는 적격투자회사(RIC) 주식의 세무가액(Basis)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며, 적격투자회사(RIC)가 투자한 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개별 투자자에게 배분되어 소득의 원천별로 과세되므로, 자본손실이 과세소득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투자자의 취득 당시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환매 시점에 과세소득을 계산한다면, 자본손실이 자본이득이나 다른 금융소득을 초과한 경우에 그 환매와 관련하여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도관 또는 실체에 대한 구분

간접투자기구를 도관으로 볼지 혹은 실체로 볼지의 구분은 투자자와 간접투자기구의 과세소득 종류와 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투자신탁을 위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재산을 신탁한 신탁자의 안정성 유지에 정책의 중요성을 두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도 간접투자기구를 도관으로 보는 관점에서 규정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투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을 투자신탁의 규정과 일치시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이 예정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간접투자 상품들에 관한 많은 규제가 풀려서 투자신탁과 같이 법률의 규제를 많이 받는 상품이 줄어들고, 투자자가 일부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간접투자의 방법들이 발전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의 투자 의사와 무관하게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간접투자기구도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간접투자기구를 실질적으로 도관으로 보는 간접투자세제로는 간접투자산업의 발전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 간접투자기구에 따라 규정된 복잡한 세법규정들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간접투자기구의 법적인 성격이 아닌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도관성을 부여하여 과세할지 아니면 실체성을 부여하여 과세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투자기구의 실체성은 그것이 법률상 회사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간접투자기구가 회사(투자회사)이면 세법에서도 법인으로 보아 실체를 인정하며, 간접투자기구가 투자신탁이면 도관으로 보아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분류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사나 투자신탁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고 보아 둘의 과세효과를 동일하게 조정하고 있다. 조세효과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회사의 조세효과를 투자신탁의 조세효과에 맞추는 방법이나 투자신탁의 조세효과를 투자회사의 조세효과에 맞추는 방법이 있다. 먼저 간접투자기구 단계에서는 투자회사의 조세효과를 투자신탁의 조세효과에 맞추는 방법으로 조세효과를 동일하게 한다. 즉 투자회사는 법인 실체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지급배당 공제제도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부담할 세액은 없다. 또한 투자회사의 주식은 환매되어도 증권거래법상,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반면, 투자자 단계에서는 투자신탁의 조세효과를 투자회사의 조세효과에 맞추는 방법으로 조세효과를 동일하게 한다. 즉, 투자자가 투자신탁으로부터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이것은 투자회사의 배당금과 같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세법상 실체성 판단은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법적인 분류에 따라 세법상 법인을 규정한다는 점은 한국과 유사하다. 즉 투자신탁회사(ITC)는 회사법(Corporation Act)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이므로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되나 단위신탁(Unit Trust)의 법적인 실체는 신탁으로 세법상 도관으로 본다. 하지만, 승인단위신탁(AUT)의 경우 비록 법적인 형식은 신탁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아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적인 형식에도 불구하고 간접투자기구가 일정한 요건에 충족될 경우 적격투자회사(RIC)로 분류되며, 적격투자회사(RIC)를 규율하는 별도의 세법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간접투자기구가 법인이던, 파트너십이던, 신탁이던 적격투자회사(RIC)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면, 적격투자회사(RIC)을 규율하는 별도의 세법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간접투자제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될 경우 회사, 조합 및 신탁 등이 다양하게 간접투자기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법적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도관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관으로 보아 과세하고, 실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실제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는 총괄적인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안중석·한상국 외, 『금융제도 및 금융부분에 대한 과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7.
- 손영철, 『국제펀드의 세제』, 자산운용협회, 2006a.
- 손영철, 『간접투자세제』, 자산운용협회, 2006b.
- 손영철, 『주요국의 펀드세제』, 자산운용협회, 2006.
- 이철송, 『투자신탁계약의 책임구조』, 『투신』, 제54호, 2005.
- 이용섭, 『국제조세』, 세경사, 2005.
- 안중석·구자은, 『주요국의 이중과세배제방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현황과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6.
- Cornor Hurely·David J. Rachofsky·Eiki Kawakami, “The taxation of investment funds,” IFA, 1997.
- Philip F. Postlewaite, “International Taxation: Cases, Materials, and Problems,” Anderson Publishing Co., 1999.
- IBFD, “Investment Fund,” <http://online2.ibfd.org/if/>
- 자산운용협회, “세무자료실,” <http://www.amak.or.kr/Kor/Info/InTaxList.aspx>

세법연구 07-0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간접투자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2007년 11월 23일 인쇄

2007년 11월 29일 발행

저 자 안종석 · 전병목 · 김태훈 · 문예영

발행인 황 성 현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7 ISBN 978-89-8191-360-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